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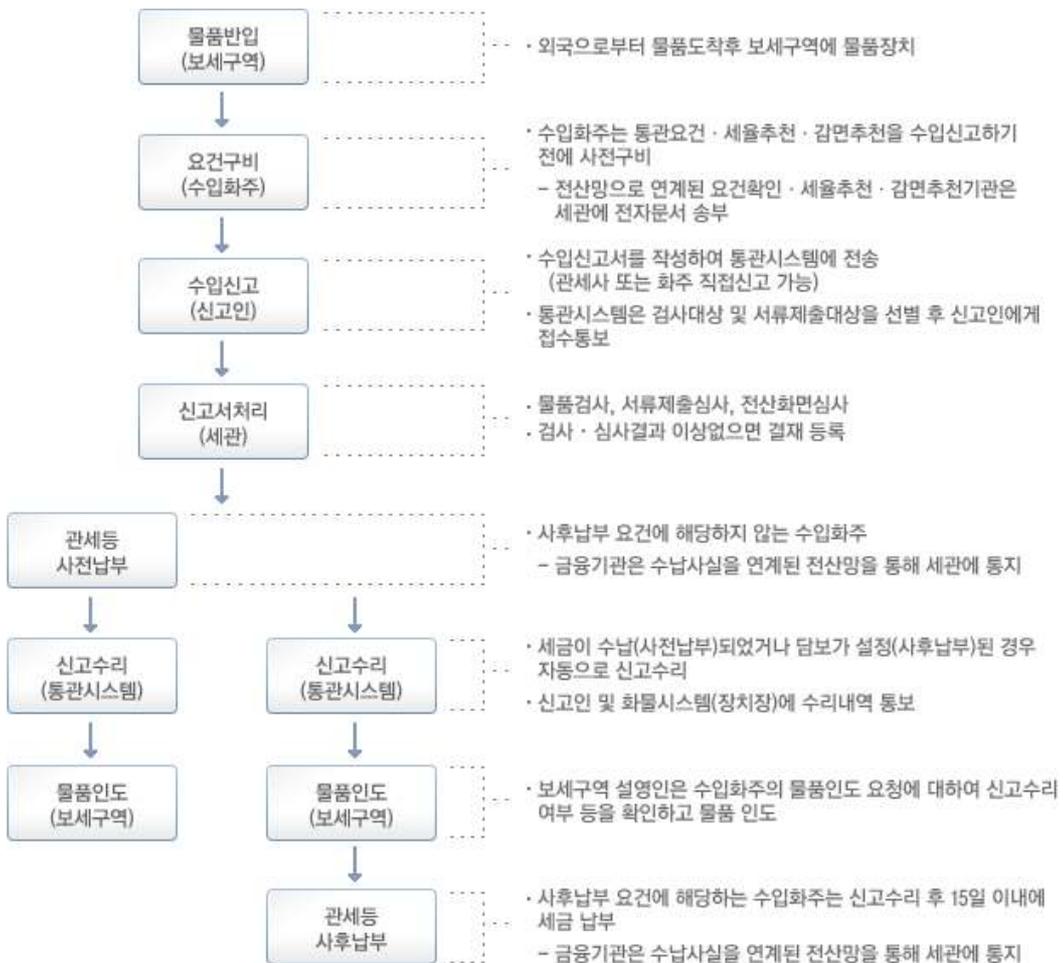
**(무역법규론 제11주차)**

**제 3 절 수입통관절차**

**1. 수입통관개요**

-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이 ①출항하기 전, ②입항하기 전, ③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수입통관절차도)



## 2. 수입신고

### 1) 수입신고인

#### ① 관세사

- 관세사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통관의 위임을 받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개업형태에 따라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합동관세사, 개인관세사로 나뉜다.

#### ② 수입화주

- 수입화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기가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관세법상 수입화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
-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로서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수입신고서 기재사항(법 제 241조제1항, 시행령 제246조제1항)

#### ① 법에서 정한 사항

-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 ②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1.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2.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4. 상표
5.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그 밖의 참고사항

### 3) 제출서류 및 서류의 보관

#### 가. 제출서류

- 수출입신고자(반송포함)는 과세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245조제1항)
  -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참고서류(시행령 제250조제1항)
- 서류의 제출생략(법 제245조제2항)
  -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수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수입신고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세관장이 신고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7조제1항)

#### 나. 전자문서로 신고

- 수입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327조제2항)

#### 다. 종이서류로 신고(예외)

- 수입신고는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P/L신고”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제1항및제2항)
  1. <삭 제> ( '02.12.24 삭제)
  2.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대상물품
  4.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
  5. 할당·양허관세 신청물품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6.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7.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 다만,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은 제외한다.
  8.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9.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10. <삭 제> ( '02.12.24 삭제)
  11.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물품신고수리전반출승인물품보세판매장반입물품 및 선(기)용품 수입물품
  12. <삭 제> ( '02.12.24 삭제)
  13.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
  14.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중 품명·규격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
  15. <삭 제> ( '02.12.24 삭제)
  16. 지방세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04.3.30 신설)
  17.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 ( '06.9.29 신설)

- 18. <삭 제> ( '08.9.16 삭제)
- 19.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 ( '07.12.28 신설)
- 20. 같은 컨테이너에 화주가 다른 선하증권(B/L)이 혼재되어 있으나 부두직통관을 신청한 물품 ( '10.8.2 신설)
- 21. 그 밖에 세관장이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라. 서류의 보관(5년간) :** 전자통관신고 시 제출하지 않고 신고인이 자체 보관(원칙)

- 신고를 의뢰받은 신고인(관세사 등)은 세관에서 통관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류를 제출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법 제12조)
- 다만, 세관장의 요구에 의해 종이문서로 제출된 서류는 세관장이 보관한다.
  - ☞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서류심사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수입신고사항만 입력하고 위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신고인이 자체 보관한다.
-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 또는 전자 이미지화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p><b>(서류제출 시 아래 서류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품장(INVOICE).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고시 제출)</li> <li>-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함)</li> <li>- 선하증권(B/L)부분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AWB) 부분(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li> <li>-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li> <li>-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li> <li>- 검사검역허가추천 등 수입요건 구비서류(수입요건 구비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li> <li>※ 수입요건 구비서류 : 환경보호, 사회안전, 국민건강보호 등의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34개 개별 법령에서 수입과 관련하여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세관장확인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시에 물품별로 정해진 검사·검역·추천·허가·확인 등 해당기관에서 수입필요사항으로 발행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li> <li>-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li> <li>- 합의세율적용승인(신청)서</li> <li>- 지방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li> <li>-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다이아몬드 원석에 한함)</li> <li>-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li> </ul>
---

<p><b>수출입신고서류의 보관기간(법 제12조, 시행령 제3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부터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수입신고필증</li> <li>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li> <li>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li> <li>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li> </ul> </li> <li>2.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부터 3년</li> </ol>
---

가. 수출신고필증 나. 반송신고필증 다. 수출물품 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라. 수출거래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 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나.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

#### 4) 수입신고기간

##### ① 반입일로 30일 이내의 신고의무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타소장치한 자는 반입일(또는 타소장치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수입신고지연 및 반송신고지연가산세

-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반입일 또는 타소장치허가일로부터 30일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범위내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다. 단, 가산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241조, 시행령 제247조)

(신고지연의 가산세율 : 시행령 제247조)

구 분	가산세율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신고	과세가격의 5/1,000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 신고	과세가격의 10/1,000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이내 신고	과세가격의 15/1,000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80일 이후 신고	과세가격의 20/1,000

\* 500만원 초과 불가

#### 5) 수입신고시기에 따른 통관절차

구 분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신고시기	우리나라 입항 5일전 (항공기는 1일전)으로 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적재항 출항전	우리나라 입항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으로 선박(항공기) 출항후 입항(하선)기신고전	입항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 전	당해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후 (장치후 30일 이내 신고)
신고대상 물품	1)항공기로 수입되는 FCL화물 2)일본·중국·대만·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FCL화물	FCL화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신고세관	입항예정지 세관	입항예정지 세관	보세구역 관할세관	보세구역 관할세관
검사대상 여부 통보 시기	선박(항공기)이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출(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하는 시점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신고 수리 시기	적하목록 제출후 물품검사 종료후	적하목록 제출후 물품검사 종료후	보세구역 도착보고후 물품검사 종료후	수입신고후 물품검사 종료후

<b>대상</b>			
-----------	--	--	--

\* FCL(Full Container Load, 만재화물) : CY(container yard)에서 취급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소량화물) :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취급

**(연습문제)**  
 수입업자 A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 업무상 착오가 있어 반입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수입신고를 하였다. 과세가격이 2,000만원일 때 수입신고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얼마인가?  
 (해 설) 수입물품은 보세구역 반입일로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해야 한다. 반입일로 6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수입신고지연일수는 30일이 된다. 따라서 가산세율 10/1,000이 적용된다.  
 - 2,000만원 × 10/1,000 = 20만원

**6) 출항전(또는 입항전) 신고 제외 대상(우리나라에 도착후 수입신고할 것)**

-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다만, 당해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법령의 시행일 보다 빠른 경우에는 제외)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7) 수입신고세관**

-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 신고 :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 수입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 수입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3. 통관심사(신고의 처리) 및 반출**

**1) 통관심사(신고의 처리)(제248조~제250조)**

- 수입신고서는 **화면심사, 서류심사, 물품검사** 등의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수리한다.
  - 세관 접수담당은 수입통관시스템에 조회하여 C/S결과 우범성정보 등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즉시수리대상, 서류심사대상, 물품검사대상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고서의 처리방법을 정한다. 그리고 즉시수리대상은 형식적 심사만하고, 서류심사대상 및 물품검사대상의 경우에는 실질적 심사를 한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다.

- **보완요구** : 수입신고수리후 보완가능(법 제249조)
  -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통관보류** : 보완 후에 신고수리가능
  -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세법칙형으로 고발의뢰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 **신고각하** (수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수입신고수리를 거절하는 것)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멸각,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될 경우
  -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 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신고취하** (수입신고수리 후 신고인이 수입신고를 취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 법 제250조)
  -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법 제252조)

### 가. 의의 (수입신고 ~ 수인신고수리 사이에 반출)

-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 나. 효과

-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법 제143조제3항)

## 3)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법 제253조)

### 가. 의의 (수입신고 전에 반출)

-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나. 대상(주체와 객체)

-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다.

## 다. 절차

### ○ 신고기한

제1항에 따른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 결정고지 및 가산세

반출을 한 자가 신고기간(10일)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즉시반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4. 수입물품검사(법 제265조)

### 1) 개념

○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현품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 검사대상선별시스템(C/S(Cargo Selectivity)시스템)

과거의 경험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불성실하게 수입신고할 우려가 있는 물품(“우범물품”)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2) 검사대상물품의 선정

○ 전산에서 수입신고를 하면, C/S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검사대상여부가 결정되어 통보된다.

#### ① 물품별 요인

물품의 규격에 따라 등급·종류별 가격차가 심한 물품, 고가품으로서 수량·규격확인이 필요한 물품, 중고품 등 위장수입우려물품, 수입제한사항을 회피하여 수입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위조상표 부착 및 원산지 허위표시 우려가 있는 물품, 사회물의 야기 대상물품, 기타 법위반 우려물품

#### ② 업체별 요인

수입업체의 성실도에 따라 우범성 물품 선정기준이 달라진다. 업체의 성실도는 과거 수십년간의 기록자료(전산)에 의해 판단한다.

### 3) C/S시스템의 예외

○ 수입검사업무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세관장은 검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C/S검사생략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3조)

1. 신고된 품명규격이 해당 세번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된 품명규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 수입요건 해당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입신고 내용에 대한 서류심사 과정에서 수입자, 공급자의 주소가 사서함, 호텔 주소 등으로 불명확한 경우
3.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분석이 필요한 경우

4.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의 타 물품 은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수량 및 중량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신고서와 첨부서류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7.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 및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사전세액심사를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9. 타 부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을 적발한 물품 중 통관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11. 내륙지 소재 세관에 해당세관 관할내 소재하지 않은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1. 재수입(출) 면세대상물품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2. 신고된 품목에 비하여 중량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13.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0조에 따라 B/L분할신고되는 FCL화물로서 분할되는 B/L물품에 전량검사가 필요한 경우
14. 기타 밀수입 등 부정무역에 대한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C/S검사대상물품을 검사생략하는 경우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3조)
  - 관리대상화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
  - 제조업체가 제조공정에 투입하기 위하여 반복수입하는 원자재로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세가격이 U\$600 이하의 물품으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동일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검사방법

- 검사방법은 검사대상물품에 따라 발취검사, 전량검사, 분석검사에 의할 수 있다.
-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신고인의 입회, 검사장소 관리인 또는 수입화주에게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개포장을 위한 작업인부의 배치 등 검사준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준비가 되지 않아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순위를 조정하여 검사준비가 된 때에 검사를 실시한다.
- 수입물품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한다.

#### 5.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 법 제248조

-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신고인(관세사 등)에게 교부한다.
  -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면 즉시 신고번호가 부여된다.
-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각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수입신고서에 세관특수청인을 직접 날인하여 교부
  -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항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

#### 6. 납세신고 및 세액납부

### 1) 납세신고

- 수입신고서 수입신고서에 품명·규격·수량·적용세번·적용세율, 납부할 금액, 감면 조항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는데, 이를 “납세신고”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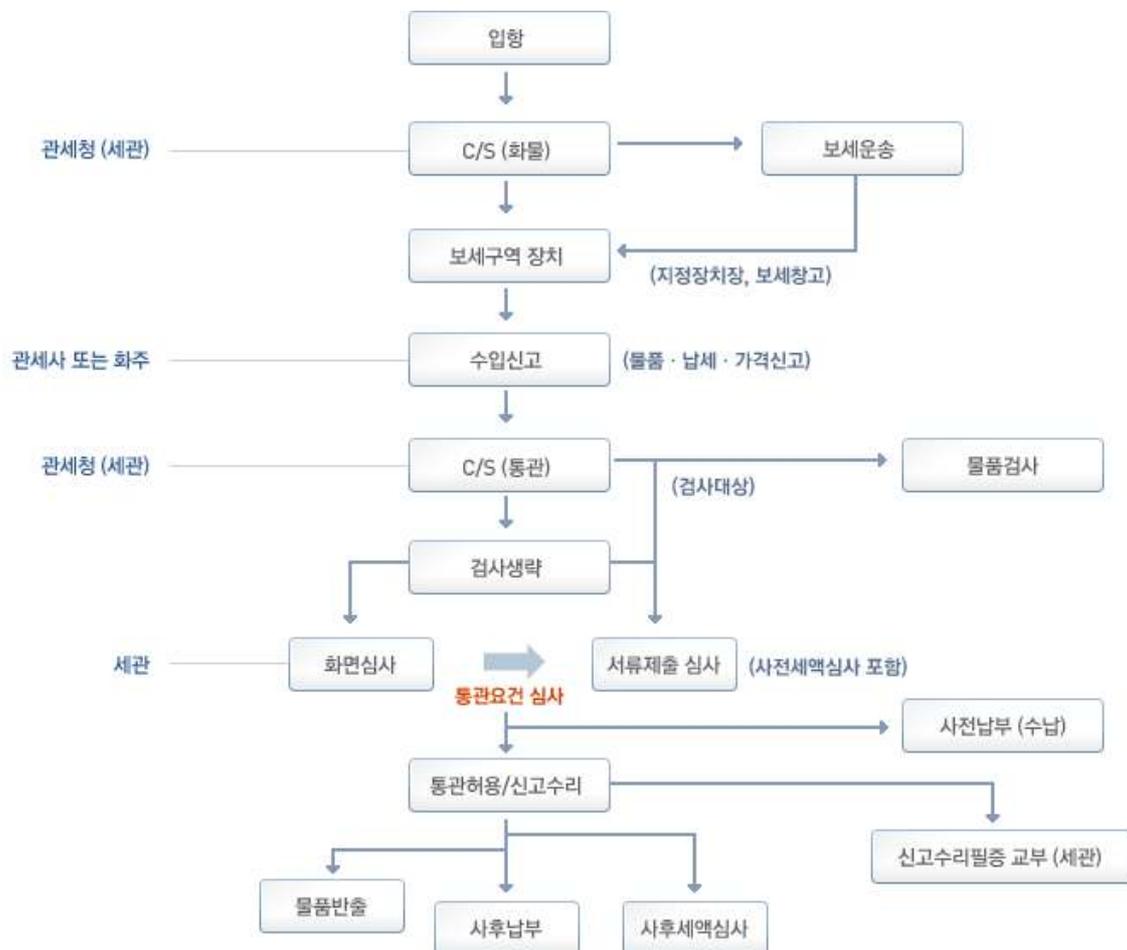
### 2) 세액심사 : 수입신고 수리 후 세액심사

-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서를 심사하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수입통관후) 심사한다.(원칙)

### 3) 세액납부

- 신고납부
  - 관세의무자는 납세신고가 수리된 날(즉 수입통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원칙)
- 부과고지
  - 세관장이 부과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물품의 납부기한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 15일 이내

(수입통관흐름도)



[별지 제1호 서식] (관세청 홈페이지 : 고객의 소리 - 통합자료실 - 민원업무편람에서 검색)



# 수출신고서 (감지)

※ 처리기간 : 즉시

제출번호 99999-99-9999999	⑤신고번호 999-99-99-9999999	⑥신고일자 YYYY/MM/DD	⑦신고구분 X	⑧C/S구분 X
①신고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②수출대행자 (통관고유번호) XXXXXXX-9-99-9-99-9 수출화주 (통관고유번호) XXXXXXX-9-99-9-99-9 (주소) XXX (대표자) 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수출자구분 X	⑨거래구분 XX	⑩종류 X	⑪결제방법 XX
		⑫목적국 XXXXXXX	⑬적재항 XXXXXXX	⑭선박회사 XXXXXXX (항공사)
		⑮선박명(항공편명) XXXXXXX	⑯출항예정일자 XXXXXXX	⑰적재예정정보세구역 XXXXXXX
		⑲운송형태 XX XXX	⑱검사희망일 YYYY/MM/DD	
		⑳물품소재지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③제조사 (통관고유번호) XXXXXXX-9-99-9-99-9 제조장소 XXX 산업단지부호 XXX		㉑L/C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	㉒물품상태 X	
		㉓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X	㉔반송 사유 XX	
④구매자 (구매자부호) XXXXXXXXX		㉕환급신청인 X (1:수출대행자/수출화주, 2:제조사) 간이환급 XX		

· 품명 · 규격 (란번호/총란수: 999/999)

⑲품명 XXX	㉙상표명 XXXXXXXXXXXXXXXXXXXXXXX
㉗거래품명 XXX	

㉚모델 · 규격	㉛성분	㉜수량	㉝단가(XXX)	㉞금액(X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XX)	9,999,999,999.9 9	999,999,999.99

모델 · 규격의 갯수 및 길이  
따라 세로길이 가변적.

㉚세번번호 9999.99-9999	㉛순중량 999,999,999,999(XX)	㉜수량 999,999,999,999(XX)	㉝신고가격(FOB) ₩999,999,999
㉞송품장번호 XXXXXXXXXXX	㉟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XXX)	㊱원산지 XX-X-X	㊲포장갯수(종류) 999,999(XX)
㊳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㊴총중량 999,999,999(XX)	㊵총포장갯수 999,999(XX)	㊶총신고가격(FOB) \$ 999,999,999,999 ₩ 999,999,999,999,999	
㊷운임(₩) 999,999,999	㊸보험료(₩) 999,999,999,999	㊹결제금액	XXX-XXX-999,999,999,999,999
㊺수입화물관리번호	XXXXXXXXXXXXXXXXXXXX	X	㊻컨테이너번호 XXXXXXXXXX X

※신고인기재란 XX XX XX XX XX	㊼세관기재란 XX XX XX XX XX
---	--

㊽운송(신고)인 XXXXXXXXXXXXXXXXXXXXXXX ㊾기간 YYYY/MM/DD 부터 YYYY/MM/DD 까지	㊿적재의무기한 YYYY/MM/DD	㊻담당자 XXXXX(XXXXXX)	㊼신고수리일자 YYYY/MM/DD
---	--------------------	--------------------	--------------------

-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51조, 제277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portal.customs.go.kr>)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지)

※ 처리기간 : 즉시

제출번호 99999-99-9999999	⑤신고번호 999-99-99-99999999	⑥신고일자 YYYY/MM/DD	⑦신고구분 X	⑧C/S구분 X
①신고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수출자구분 X			
②수출대행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번호) XXXXXXXX-9-99-9-99-9	⑨거래구분 XX	⑩종류 X	⑪결제방법 XX	
수출화주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번호) XXXXXXXX-9-99-9-99-9 (주소) XX (대표자) XXXXXXXXXXXX (소재지) XXX	⑫목적국 XXXXXXXX	⑬적재항 XXXXXXXX	⑭선박회사 XXXXXXXX (항공사)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⑮선박명(항공편명) XXXXXXXX	⑯출항예정일자 XXXXXXXX	⑰적재정보세구역 XXXXXXXX	
③제조사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번호) XXXXXXXX-9-99-9-99-9 제조장소 XXX 산업단지번호 XXX	⑱운송형태 XX XXX		⑲검사희망일 YYYY/MM/DD	
④구매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구매자번호) XXXXXXXXX	⑳물품소재지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㉑L/C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		
	㉒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X		㉓반송 사유 XX	
	㉔환급신청인 X (1:수출대행자/수출화주, 2:제조사) 간이환급 XX			

· 품명 · 규격 (란번호/총란수: 999/999)

⑲품명 XX	㉕상표명 XXXXXXXXXXXXXXXXXXXXXXX			
⑲거래품명 XX				
⑲모델 · 규격	⑳성분	㉑수량	㉒단가(XXX)	㉓금액(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999,999,999,999(XXX)	9,999,999,999.9 9	999,999,999.99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모델 · 규격의 갯수 및 길이              따라 세로길이 가변적.           </div>				
㉔세번번호 9999.99-9999	㉕순중량 999,999,999,999(XX)	㉖수량 999,999,999,999(XX)	㉗신고가격(FOB) ₩999,999,999	
㉘송품장번호 XXXXXXXXXX	㉙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X(XXX)	㉚원산지 XX-X-X	㉛포장갯수(종류) 999,999(XX)	
㉜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㉝총중량 999,999,999(XX)	㉞총포장갯수 999,999 (XX)	㉟총신고가격 (FOB) \$ 999,999,999,999 ₩ 999,999,999,999,999		
㊱운임(₩) 999,999,999	㊲보험료(₩) 999,999,999,999	㊳결제금액 XXX-XXX-999,999,999,999,999		
㊴수입화물 관리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	X	㊵컨테이너번호 XXXXXXXXXXXXXXX	X	

*신고인기재란		㉞세관기재란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㉟운송(신고)인 XXXXXXXXXXXXXXXXXXXXXXX	㊶적재의무기한 YYYY/MM/DD	㊷담당자 XXXXXX(XXXXXX)	㊸신고수리일자 YYYY/MM/DD		
㊹기간 YYYY/MM/DD 부터 YYYY/MM/DD 까지					

-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51조, 제277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portal.customs.go.kr>)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갑지)

※ 처리기간 : 즉시

제출번호 99999-99-9999999	⑤신고번호 999-99-99-99999999	⑥신고일자 YYYY/MM/DD	⑦신고구분 X	⑧C/S구분 X
①신고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②수출대행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번호) XXXXXXXX-9-99-9-99-9	수출자구분 X	⑨거래구분 XX	⑩종류 X	⑪결제방법 XX
수출화주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번호) XXXXXXXX-9-99-9-99-9 (주소) XX (대표자) XXXXXXXXXXXX (소재지) 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⑫목적국 XXXXXXXX	⑬적재항 XXXXXXXX	⑭선박회사 XXXXXXXX (항공사)
		⑮선박명(항공편명) XXXXXXXX	⑯출항예정일자 XXXXXXXX	⑰적재예정보세구역 XXXXXXXX
		⑱운송형태 XX XXX	⑲검사희망일 YYYY/MM/DD	
		⑳물품소재지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③제조사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통관고유번호) XXXXXXXX-9-99-9-99-9		㉑L/C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	㉒물품상태 X	
제조장소 XXX 산업단지번호 XXX		㉓사전임시개청통보여부 X	㉔반송 사유 XX	
④구매자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구매자번호) XXXXXXXX		㉕환급신청인 X (1:수출대행자/수출화주, 2:제조사) 간이환급 XX		

· 품명 · 규격 (란번호/총란수: 999/999)

⑲품명 XX	⑳상표명 XXXXXXXXXXXXXXXXXXXXXXXX			
㉑거래품명 XX				
㉒모델 · 규격	㉓성분	㉔수량	㉕단가(XXX)	㉖금액(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999,999,999,999(XXX)	9,999,999,999.9 9	999,999,999.99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모델 · 규격의 갯수 및 길이              따라 세로길이 가변적.           </div>				
㉗세번번호 9999.99-9999	㉘순중량 999,999,999,999(XX)	㉙수량 999,999,999,999(XX)	㉚신고가격(FOB) ₩999,999,999	
㉛송품장번호 XXXXXXXXXX	㉜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XXX)	㉝원산지 XX-X-X	㉞포장갯수(종류) 999,999(XX)	
㉟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㊱총중량 999,999,999(XX)	㊲총포장갯수 999,999(XX)	㊳총신고가격(FOB) \$ 999,999,999,999 ₩ 999,999,999,999,999		
㊴운임(₩) 999,999,999	㊵보험료(₩) 999,999,999,999	㊶결제금액 XXX-XXX-999,999,999,999,999		
㊷수입화물 관리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	X	㊸컨테이너번호 XXXXXXXXXXXXXXX	X	

※신고인기재란 XXX XXX XXX XXX	㉑세관기재란 XXX XXX XXX XXX
---	--

㉒운송(신고)인 XXXXXXXXXXXXXXXXXXXXXXX	㉓적재의무기한 YYYY/MM/DD	㉔담당자 XXXXX(XXXXXX)	㉕신고수리일자 YYYY/MM/DD
㉖기간 YYYY/MM/DD 부터 YYYY/MM/DD 까지			

-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51조, 제277조)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portal.customs.go.kr>)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을지)

※ 처리기간 : 즉시

제출번호 99999-99-99999999	⑤신고번호 999-99-99-99999999	⑥신고일자 YYYY/MM/DD	⑦신고구분 X	⑧C/S구분 X
①신 고 자 XXX				

· 품명 · 규격 (란번호/총란수: 999/999)

⑫품 명 XX		⑬상표명 XXXXXXXXXXXXXXXXXXXXXXX		
⑭거래품명 XX				
⑮모델 · 규격	⑯성분	⑰수량	⑱단가(XXX)	㉓금액(XXX)
XX XX XX XX <b>모델 · 규격의 갯수 및 길이에 따라 세로길이 가변적.</b> XX XX	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XX)	9,999,999,999.99	999,999,999.99
⑳세번부호 9999.99-9999	㉒순중량 999,999,999,999(XX)	㉔수량 999,999,999,999(XX)	㉖신고가격(FOB)	₩999,999,999
㉘송품장번호 XXXXXXXXXXXX	㉙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X(XXX)	㉚원산지 XX-X-X	㉛포장갯수(종류)	999,999(XX)
㉜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 품명 · 규격 (란번호/총란수: 999/999)

⑫품 명 XX		⑬상표명 XXXXXXXXXXXXXXXXXXXXXXX		
⑭거래품명 XX				
⑮모델 · 규격	⑯성분	⑰수량	⑱단가(XXX)	㉓금액(XXX)
XX XX XX XX <b>모델 · 규격의 갯수 및 길이에 따라 세로길이 가변적.</b> XX XX	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XX)	9,999,999,999.99	999,999,999.99
⑳세번부호 9999.99-9999	㉒순중량 999,999,999,999(XX)	㉔수량 999,999,999,999(XX)	㉖신고가격(FOB)	₩999,999,999
㉘송품장번호 XXXXXXXXXXXX	㉙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X(XXX)	㉚원산지 XX-X-X	㉛포장갯수(종류)	999,999(XX)
㉜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 품명 · 규격 (란번호/총란수: 999/999)

⑫품 명 XX		⑬상표명 XXXXXXXXXXXXXXXXXXXXXXX		
⑭거래품명 XX				
⑮모델 · 규격	⑯성분	⑰수량	⑱단가(XXX)	㉓금액(XXX)
XX XX XX XX <b>모델 · 규격의 갯수 및 길이에 따라 세로길이 가변적.</b> XX XX	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XX)	9,999,999,999.99	999,999,999.99
⑳세번부호 9999.99-9999	㉒순중량 999,999,999,999(XX)	㉔수량 999,999,999,999(XX)	㉖신고가격(FOB)	₩999,999,999
㉘송품장번호 XXXXXXXXXXXX	㉙수입신고번호 XXXXX-XX-XXXXXXX-X(XXX)	㉚원산지 XX-X-X	㉛포장갯수(종류)	999,999(XX)
㉜수출요건확인 (발급서류명)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

(1)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251조, 제277조) 또한 휴대락속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부두, 초소, 공항)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portal.customs.go.kr>)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 일반사항

-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반송·수출)신고서는 수출신고서를 사용한다.("남북교역 물품통관관리예관한고시" 및 "반송절차예관한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송)하는 물품의 신고시에도 동일하다)
- 수출신고서는 상업송품장(Commercial Invoice) 또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신고 시점에 제시된 현품과 동일해야 한다.
- 품목번호 또는 품목별로 별도의 『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동일 『란』안에는 모델·규격별로 "모델·규격, 성분, 상표명, 수량, 단가, 금액"을 최대 50행까지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모델·규격이 최대 50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부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부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
- 다수의 품목으로 신고서 1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을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서의 우측 상단에 "을지"라 표시한다.
-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류 등 주요품목에 부수하여 수출되는 품목으로서 금액이 적고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환급 또는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수되는 품목 중에서 무역통계상 별 의미가 없는 품목은 일괄하여 한 『란』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부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원·부자재와 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주요 부품(A/S 목적 등) 및 해외 현지조립 방식(Knock Down방식) 수출 물품으로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환급 또는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괄하여 한 『란』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부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비환급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모델·규격 구분없이 일괄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의 '송품장부호'란에 반드시 해당 송품장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이사물품의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이 다양하여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일 때에는 제1란 품명 및 거래품명에 대표적으로 이사물품임을 「Household goods」으로 영문표기하고 그에 대한 세번은 2424.00-0000으로 기재하며, 품목별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은 일괄하여 해당란에 기재하고, 품목별 세부내용은 신고서에 첨부된 포장명세서 기타 물품목록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같음할 수 있다. 다만, 이사물품 중 재수출조건 이행 또는 재수입면세와 관련된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제2란부터 당해물품의 HS 세번별로 각각의 품명·규격란을 설정하여 일반 수출물품의 경우와 같이 품명, 거래품명, 모델·규격, 성분, 상표명, 원산지, 세번, 수량, 중량, 포장갯수, 금액 등을 각 해당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신고서에 의거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 결제금액에 운임,보험료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운임·보험료 등을 수출자(제조사)가 구분하여야 하며 관세사등 신고인은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수출신고서 용도별 구분
  - 수출신고서(보관용) : 세관/신고인 보관용 수출신고서
  - 수출신고필증 : 신고필증 발급용
- 수출신고서의 형식
  - 전산기에 의하여 출력되는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 신고항목의 상하 출력위치가 가변적인 FREE FORM 형태의 서식을 사용.수출신고서의 좌우 출력위치는 고정적임.
- 수출신고서 출력시 출력내용이 첫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계속하여 출력하되, 신고서의 제출번호, ①과 ⑤~⑧ 항목은 매 페이지별로 동일한 위치에 반복하여 출력한다.
- 통계부호의 추가, 삭제, 변경사항이 시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전 직원 및 관세사에게 숙지시키고 관계자료를 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예
①신고자	A..	40	M	공통	○ 신고자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 - 관세사의 경우 : 신고자상호, 관세사성명 기재 - 자가통관업체의 경우 : 신고자상호, 대표자성명 기재 - 기타 개인의 경우 : 성명 기재 ※ 다만, 화주(당해 수출물품의 소유자) 또는 완제품 공급자 직접신고로서 관세사 명의로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회사(주) 관세사○○○으로 기재	- 최신 관세법인 관세사 최고봉 - (주)최신상사 최고봉 - 최고봉 - 최신상사(주) 관세사 최고봉
- 제출번호	AN	14	M	공통	○ 신고자 부호, 년도 및 신고서 작성 일련번호를 기재 - 신고자 부호는 통계부호표 참조 ※ 상호가 없는 기타(개인)의 경우에는 제출번호 기재 생략	- 12345-04-0001230
②수출대행자	AN..	28	M	공통	○ 수출대행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 수출대행자가 다수인 경우 ○○○의 ○명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출대행자별로 분리하여 신고	- (주)다파라인터내셔널
- (통관고유부호)	AN	15	C	공통	○ 수출대행자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 관세청장(세관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 초일류**1741204
- (일련번호)	AN..	4	C	공통	○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해당사업장 일련번호	- 본사:0000, 지사:0001 ~ (지사는 해당번호 기입)
- 수출자 구분	AN	1	M	공통	○ 아래 해당코드를 기재 - 수출대행자가 제조자와 동일한 경우 : A - 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 : B - 수출대행자가 완제품공급(원상태 공급을 포함한다)을 받아 수출한 경우 : C -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본-지사 관계인 경우 : D	- A
- 수출화주	AN..	28	M	공통	○ 수출화주의 상호를 기재	- (주)초일류상사
- (주소)	AN..	35	M	공통	○ 수출화주의 주소를 기재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333
- (대표자)	AN..	12	M	공통	○ 수출화주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 최일류
- (통관고유부호)	AN	15	C	공통	○ 수출화주의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 수출대행자 또는 수출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외국인은 기재 생략	- 초일류**1741204
- (일련번호)	AN..	4	C	공통	○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해당사업장 일련번호	- 본사:0000, 지사:0001 ~ (지사는 해당번호 기입)
- (사업자등록번호)	AN..	13	C	공통	○ 수출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의 경우)를 기재,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번호 앞자리에 "F"를 기재하고 13자("F"포함) 이내로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112-29-66062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 : 701230-1645917 - 외국인으로 여권번호가 12345678901234인 경우 : F123456789012
- (소재지)	AN	3	M	공통	○ 수출화주 소재지의 우편번호 앞 3자리 번호를 기재.	- 134
③제조자	AN..	28	M	공통	○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자의 상호를 기재	- (주)메이저상사
- (통관고유부호)	AN	15	M	공통	○ 관세청장(세관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 국내제조자가 없는 수입물품, 반송물품, 제조자들	- 메이저**1741204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예
					알 수 없는 시중구매물품, 제조자 다수 등으로 제조자 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조자 상호를 "미상"으로 하고 통관고유부호는 "제조미상 9999000"으로 기재	
- (일련번호)	AN..	4	C	공통	○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해당사업장 일련번호	- 본사:0000, 지사:0001~ (지사는 해당번호 기입)
제조장소	AN	3	M	공통	○ 수출물품 제조장소(공장)의 우편번호 앞 3자리 번호를 기재. 다만, 제조자가 미상인 경우에는 수출화주 소재지 우편번호 앞 3자리 기재	- 134
산업단지부호	AN	3	M	공통	○ 수출물품 제조장소의 산업단지부호 기재 (통계부호표 참조) - 산업단지부호가 아닌 경우 '999' 기재	- 246
④구매자	AN..	26	M	공통	○ 상업송품장(Invoice)상에 명시된 외국의 구매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	- MADONA CO
- (구매자부호)	AN..	13	M	공통	○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해외거래처 부호를 기재 - 등록된 해외거래처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세청(세관장)에서 부여받아 기재	- CNTOSHIN12347
⑤신고번호					○ 통관지 세관부호 및 과부호, 년도를 기재	
- 신고세관	AN	3	M	공통	- 신고세관을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010
- 신고과	AN	2	M	공통	- 신고과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일련번호 및 체크디지트는 세관 접수시 부여하는 것으로 기재할 필요 없음	- 10
⑥신고일자	AN	8	M	공통	○ 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날짜를 YYYYMMDD(연월일)로 기재	- 20040312
⑦신고구분	AN	1	M	공통	○ P/L, 서류제출, 반송 등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H
⑧Cβ구분			X	공통	○ 세관기재(검사생략 등)란으로 기재 생략	
⑨거래구분	AN	2	M	공통	○ 일반형태수출 등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11
⑩종류	AN	1	M	공통	○ 일반보세공장수출 등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A
⑪결제방법	AN	2	M	공통	○ L/C, 단순송금 등 해당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TT
⑫목적국	AN	7	M	서류	○ 수출물품의 최종 도착국가에 대한 약어를 기재	- JAPAN
- 코드	AN	2	M	공통	○ 해당 ISO 국가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JP
⑬적재항	AN	12	M	서류	○ 수출물품이 적재되는 항구·공항명을 기재	- 부산항
- 코드	AN..	5	M	공통	(통계부호표 참조)	- PUS
⑭선박회사(또는 항공사)	AN	25	C	서류	○ 당해 항차의 선박운항을 책임지는 선박회사의 상호 또는 당해 항행의 항공기 운항을 책임지는 항공사 상호	- HANJIN SHIPPING CO.LTD
- 코드	AN	4	C	공통	○ 관세청에 등록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의 코드 기재	- HJSC, KE
⑮선박명(또는항공편명)	AN	23	C	공통	○ 선박의 고유명칭(선박명을 23자리 이내의 영문으로 기재) ○ 국외로 출항하는 항공기의 운항 항공편명	- HANJIN SAVANNAH - KE1098
⑯출항예정일자	N	8	C	서류	○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항예정일을 기재	- 20100101
⑰적재예정보세구역	AN	8	C	서류	○ 적재를 위한 장치장소의 보세구역 코드를 기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 "세관부호+99999"를 기재	- 03012202 - 03099999
⑱운송형태						
- 운송수단	AN	2	M	공통	○ 운송수단 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10BU (선박에 의한 벌크) - 40UL (항공기에 의한 ULD)
- 운송용기	AN..	3	M	공통	○ 운송용기 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50ETC (우편물에 의한 기타용기)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예
⑱ 검사희망일	AN	8	M	공통	○ 세관검사 희망일을 YYYYMMDD로 기재 ※ 수출신고시점에는 수출물품이 신고한 장소에 장치되어 있어야 함	- 20040304
⑳ 물품소재지	AN	3	M	공통	○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앞 3자리를 기재	-133
- 장치장소	AN..	40	M	공통	○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 명칭(업체 상호)을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주소를 기재하되, '시,군,구,동,면,리' 용어는 생략하고 기재 - 물품소재지가 보세구역일 경우 주소(구, 군단위 까지) 및 보세구역명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보세구역이 아닐 경우 회사명과 주소 순으로 기재 ※ 동일세관, 출장소 관할지 내 물품이 2곳 이상 있을 경우 1건으로 신고 가능(대표소재지 기재) ※ 물품이 보세구역에 있을 때에는 보세구역명을 반드시 기재	- 한진보세장치장 서울 강동 명일 113-22
㉑ L/C번호	AN..	20	C	공통	○ 신용장거래방식에 의한 수출인 경우에는 L/C번호를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은행참조번호 또는 계약서 번호를 기재	- LC620-96141
㉒ 물품상태	AN	1	M	공통	○ 수출물품이 신제품인지 중고품인지 기재(신제품과중고가 동시 신고된 경우 주요물품의 상태기준으로 기재 - 신제품인 경우 : N, 중고품인 경우 : O	- N
㉓ 사전입시개청 통보여부	AN	1	M	공통	○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신고서를 전송하는 경우 사전에 입시개청을 통보한 신고서 인지 아닌지 여부를 기재 - 입시개청 미통보(입시개청대상 아님) : A - 입시개청 기통보(입시개청대상임) : B	- A
㉔ 반송사유	AN	2	C	공통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 반송물품의 경우에는 반송사유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11
㉕ 환급신청인	AN	1	C	공통	○ 수출물품이 환급대상인 경우, 환급신청인을 해당하는 번호로 기재 - 수출대행자/수출화주 : 1,        제조사 : 2	- 1
간이환급	AN	2	M	공통	○ 수출신고에 의한 자동 간이정액환급 신청 여부를 기재 - 자동 간이정액환급신청 : AD - 미신청 : NO ※ 자동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환급신청인이 수출물품의 제조자 이어야 하며 ② 거래구분은 일반형태 수출인 "11" 이어야 하고 ③ 수출물품의 제조자 통관고유부호는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된 자동환급대상 업체의 통관고유부호와 일치	- AD
㉖ 서류첨부여부	AN	1	M	EDI	○ 각 란 마다 모든 신고내역을 모델·규격별로 기재하지 않아 서류첨부가 필요한 건인지 여부를 기재	- Y(서류첨부 필요)
㉗ 품명	AN..	50	M	공통	○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10단위에 당해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기재 -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 ASPARAGUS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li> <li>○ 품목번호 중 최종 4단위에도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li> <li>○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li> <li>○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에는 「~PART」 또는 「PART FOR ~」로 일괄 기재하고 구체적인 품명은 모델·규격란에 기재</li> <li>○ 해외현지조립방식(Knock Down) 물품의 경우 “CKD” 또는 “SKD”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품명을 기재</li> <li>※ 중고물품인 경우 품명 맨 앞에 “USED” 표기</li> <li>※ 반복수출입포장용기의 경우 품명 맨 앞에 “Returnable” 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ELON JUICE</li> <li>- KIMCHI REFRIGERATOR</li> <li>- PART FOR CAR</li> <li>- “CKD” HEADPHONES</li> </ul>
㉓거래품명	AN..	50	M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상거래시 상업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품명을 기재</li> <li>○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단순히 발음을 영자로 표기</li> <li>○ 학명은 CITES 해당 여부 등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P3 PLAYER</li> <li>- TAMAGOCHI</li> <li>- MILVUS LINEATUS</li> </ul>
㉔상표명	AN..	30	M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표가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는 하나의 상표명을 기재</li> <li>- 상표에 포함되어 있는 공백을 제거하고 연결하여 기재</li> <li>※ 상표가 다른 경우 란을 달리하여 신고</li> <li>※ ‘BRAND’라는 단어는 기재하지 않음</li> <li>○ 상표가 없는 경우 ‘NO’를 기재</li> </ul>	- CHRISTIANDIOR
㉕모델·규격 - 규격번호 - 모델·규격	N.. AN..	2 400	C C	EDI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 및 규격을 기재</li> <li>- 모델·규격별 일련번호를 기재</li> <li>- 세관 심사에 필요한 모델 및 규격을 상세히 기재</li> <li>※ 하나의 모델에 규격이 여러개인 경우 각 규격별로 규격 앞에 모델명을 기재</li> <li>○ 모델명 기재방법</li> <li>- 생산방식, 생산방법, 타입 등을 나타내는 부호임</li> <li>-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 앞에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영어 대문자로 모델명 기재</li> <li>○ 규격 기재방법</li> <li>- 재질, 가공상태, 용도, 조립여부, 사이즈, 정격전압, 처리능력, 생산년도, 두께 등을 나타냄</li> <li>- 여러 규격을 기재하는 경우 ‘;’로 구분하여 기재</li> <li>○ 원부자재의 단위실량(Raw Material) 등 환급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앞에 “&lt;RM&gt;”라고 기재한 후 영어 대문자로 내역을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li> <li>- MODEL : 335MH</li> <li>- W 400mm × L 1,400mm; UNFINISHED</li> <li>- &lt;RM&gt; WIDTH:58/60" WP:POLYESTER F.YARN 75(SD)185E/INCH 86GR/YD WT:POLYESTER F.D.T.Y 150(SD) 80P/INCH 87GR/YD 2,450T/M WEIGHT-AFTER:170GR/YD</li> </ul>
㉖성분	AN..	70	C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분류, 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관세환급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함량을 기재</li> </ul>	- NYLON 20%, WOOL 80%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예
					- 농산물 혼합물 및 실,직물의 경우는 성분 및 함량을 모두 기재	
㉑수량	N..	14	C	공통	○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수량을 기재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200.0000
- 단위	AN..	3	C	공통	- 실제 수량단위를 기재	
㉒단가	N..	18	C	공통	○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단가를 기재 - 소수점 이하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14.000000
㉓금액	N..	16	C	공통	○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금액을 기재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결제금액란의 통화종류 부호를 단가 및 금액항목 우측 ( )안에 출력	- 2,800.0000
㉔세번부호	AN	10	M	공통	○ 관세율표에 기재된 세번을 10단위까지 기재	- 8528.30-0000
㉕순중량	N..	11	M	공통	○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을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320.00
- 단위	AN	2	M	공통	○ 단위는 'KG'으로 기재	
㉖수량	N..	10	C	공통	○ HS별 표준수량·중량단위표에 계기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	- 10
- 단위	AN..	2	C	공통	- HS별 표준수량·중량단위표에 중량단위만 있고 수량단위 부호가 특게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하지 않음(중량만 기재)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	
㉗신고가격	N..	15	M	공통	○ FOB 기준의 원화 가격을 원단위까지 기재 - 송품장상 결제조건이 FOB가 아닌 경우 FOB가격으로 산정하여 기재(결제조건이 CIF인 경우 운임,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 - 외국에서 수리·개조하기 위하여 반입된 선박·항공기를 수리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리·개조로 인한 가득액을 기재 - 우리나라 선박·항공기를 외국에서 수리후 반입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0"을 기재 - 선박·항공기가 아닌 기타의 경우 "물품가격+가득액"을 기재	- 결제금액이 CIF 10,000이고 운임이 1,000원, 보험료가 500원인 경우 : 8,500원 기재
㉘차대번호	AN..	20	C	EDI	○ 중고차량(임시운행차량 포함)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차대번호를 기재	- KLAJA19Y1BP8092540
- 차대관리번호 (일련번호)	AN	3	C	EDI	- 차대번호의 일련번호를 기재	- 01
㉙송품장 부호	AN..	17	C	공통	○ 상업송품장 부호를 기재 - 수출물품에 원상태수출물품이 일부 포함되어 수출되는 경우 맨 앞에 "72-"를 기재한 후 송품장 부호를 기재	- 0000083964
㉚수입신고번호	AN..	15	C	공통	○ 재수출조건부 수입물품의 수출신고시 기재	- 31010-04-1490223
- 란번호	N..	3	C	공통	- 해당 수입신고건의 란번호 기재	- 1
㉛원산지						
- 국가부호	AN	2	M	공통	○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기재	- CN
- 결정기준	AN	1	C	공통	○ 원산지 결정방법 코드를 기재 - A : 완전생산기준 - B : 부가가치기준(직접생산비기준)	- A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예
- 표시여부	AN	1	C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 : 부가가치기준(타국원재료비공제기준)</li> <li>- D : 가공공정기준</li> <li>- E : 조합기준</li> <li>- 2 : 세번변경기준(HS 2단위)</li> <li>- 4 : 세번변경기준(HS 4단위)</li> <li>- 6 : 세번변경기준(HS 6단위)</li> <li>- 8 : 세번변경기준(HS 6단위에서 세분)</li> </ul> ○ 원산지 표시여부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 : 원산지 미표시</li> <li>- Y : 현품 및 포장에 원산지 표시</li> <li>- B : 포장에만 원산지 표시</li> <li>- G : 현품에만 원산지 표시</li> </ul>	- Y
④포장개수	N..	6	M	공통	○ 해당 물품의 외포장 개수를 기재	- 3
- 종류	AN	2	M	공통	○ 수출물품의 해당 포장종류 코드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RO
④수출요건확인						
- 일련번호	AN..	2	C	EDI	○ 수출요건확인 일련번호를 기재	- 01
- 구분	AN	1	C	공통	○ 수출요건별 구분코드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 수출승인서</li> <li>- B : 수출추천서</li> <li>- C : 검사증</li> <li>- D : 검역증</li> <li>- E : 전략물자수출허가서 또는 상황허가서</li> </ul>	- D
- 요건승인번호	AN..	20	C	공통	○ 타 법령에 의한 수출요건확인서의 허가 및 승인 번호 ○ 수출승인서 기재 가. 수출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입구분 1자리</li> <li>- 기관고유코드 3자리</li> <li>- 산하기관코드 2자리</li> <li>- 연도 2자리</li> <li>- 일련번호 7자리</li> <li>- 체크디지트 1자리</li> </ul> 나.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승인면제물품인 경우에는 대외 무역관리규정의 해당 사유항목을 기재  ○ 전략물자수출허가서 기재 (상황허가서 포함) 가. 허가구분자리(1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 개별수출허가</li> <li>- B : 일반포괄수출허가</li> <li>- C : 특정포괄수출허가</li> <li>- D :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li> <li>- E : 전략물자비해당판정</li> </ul> 나. 허가번호 및 판정번호(6자리)	- ESJ00309000801 - 1127119900010686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추천 대상인 경우)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1 수출 승인의 면제 중 영 제27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 면제로서 “가”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27-2-다-가-1
- 발급서류명	AN..	35	C	공통	○ 수출요건확인서류명 ※ 신고서 출력시 20자리까지 ( )로 표시	- 문화재국의반출허가서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예
- 발급일자	AN	8	C	EDI	○ 수출요건확인서류 발급일자	- 2003-09-01
- 법령부호	AN	2	C	EDI	○ 수출요건확인관련 법령부호(통계부호표 참조) ※ 최대 8개까지 기재 가능하며, 수출신고서에는 최초 입력한 4개만 출력	- 13
㉓총중량	N..	11	M	공통	○ 수출신고 물품의 총중량(용기 포함)을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 4817.2
- 단위	AN	2	M	서류	○ 단위는 'KG'으로 기재	- KG
㉔총포장개수	N..	6	M	공통	○ 포장명세서상의 총 외포장 개수를 기재 ※ 운송용기(예 Pallet) 수량으로 기재하지 않음 ※ 수출신고서상 총포장개수의 단위는 1란의 포장종류 부호가 기재됨	- 300
㉕총신고가격	N..	15	M	공통	○ 원화 : 수출신고가격의 합계를 원단위까지 기재 (원단위 이하는 절사)	- 4,000,000
	N..	14	M	서류	○ 미화 : 총신고가격을 미화(\$로 환산하여 기재 (\$ 이하는 반올림) ※ 환산율은 관세청 고시 수출환율을 적용	- 3,044
㉖운임	N..	12	C	공통	○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된 경우 운임을 원화로 기재	- 6,940,224
㉗보험료	N..	12	C	공통	○ 결제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 보험료를 원화로 기재	- 8,847,178
㉘결제금액					○ 송품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금액(실제 결제금액) 순으로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인도조건은 INCOTERMS 2000코드를 기재 (INCOTERMS 2000 코드 이외에는 환산하여 기재)	- CIF
- 인도조건	AN	3	M	공통	EXW, FAS, FCA, FOB, CFR, CIF, CPT, CIP, DAF, DES, DEQ, DDU, DDP(13개입)	- USD
- 통화종류	AN	3	M	공통	- 통화종류는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를 기재(다만,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종류가 없는 경우에는 "USD"로 기재)	- USD
- 결제금액	N..	14	M	공통	- 금액은 통화종류에 따른 금액 실제 결제금액을 기재(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코드가 없는 경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고시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여 환산 기재)	- 2,990.00
㉙환율	N..	8	M	공통	○ 해당일자에 해당하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기재	- 1163.9100
㉚수입화물관리번호	AN..	18	C	공통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 반송물품의 경우에 당해 수입화물관리번호를 기재 - 무적화물은 "NO"를 기재 - 화물관리번호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여 전송하되 수출신고서에는 최초 입력한 번호만 출력	- 03MSCUD50A90016003
- 구분	AN..	2	C	공통	○ 전량, 분할, 여러건 반송 등의 구분 기재 - A : 화물 전량을 반송 - B : 화물을 분할하여 반송 - C : 여러건의 화물을 동시에 반송	- A
㉛컨테이너번호						
- 적입여부	AN	1	M	공통	○ 컨테이너 적입 및 컨테이너번호 확인 여부 - 'Y' 또는 'N'으로 기재	- Y
- 컨테이너번호	AN..	11	C	공통	○ 수출신고서점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고 컨테이너번호가 확인된 경우 해당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	- CKLU2005013

항 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예
					- 최대 10개까지 기재 가능하며, 수출신고서에는 최초 입력한 번호만 출력 ※ 해상으로 수출 예정인 컨테이너화물에 한함	
㉔신고인기재란	AN..	500	C	공통	○ 관세사 등 신고인이 수출신고시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 기재	- 수출자 : 제조/섭유, 의류
㉕세관기재란			X		○ 세관에서 사용하는 특기사항(예 선적확인사항 등) 기재란으로 신고시 기재할 필요 없음	
㉖운송(신고)인	AN..	30	C	공통	○ 보세운송대상물품(보세공장물품, 자유무역지역 등)인 경우 해당 보세운송신고인의 상호와 성명을 한글로 기재 ○ 일반 수출물품인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자 등 당해 수출물품의 운송인의 상호와 성명을 한글로 기재 ※ 기재방법 - 운송(신고)인이 신고자인 경우 : “신고자와 동일” - 운송(신고)인이 수출자인 경우 : “수출자와 동일” - 운송(신고)인이 제조자인 경우 : “제조자와 동일” - 운송(신고)인이 일반업체인 경우 : 상호와 성명을 기재	- 한라통운(주) 이순신
㉗기간	AN	16	C	공통	○ 보세운송대상물품인 경우 보세운송 신고수리일자 및 종료일자를 YYYY/MM/DD로 기재 ○ 일반 수출물품인 경우 운송 예정기간을 기재	- 2004/01/01~2004/01/30 - YYYY/MM/DD
㉘적제의무기간			X		○ 신고수리일로부터 기산된 최초 적제의무기한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신고인이 기재할 필요 없음	- 2003/12/17
㉙담당자			X		○ 세관의 접수 담당자	- 990101 (홍길동)
㉚신고수리일자			X		○ 세관에서 신고수리한 일자가 기재되므로 신고시 기재할 필요 없음	- 2003/11/17

(별지 제1-3호) 작성예(제2-1-7조 제4항 관련)

(갑지)



# 수 입 신 고 서

※ 처리기간 : 3일

①신고번호 99999-99-9999999-9		②신고일 YYYY/MM/DD		③세관.과 999-99		⑥입항일 YYYY/MM/DD		⑦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 XXXXXXXXXX-X-XX-XXXXXX	
④B/L(AWB)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			⑤화물관리번호 YYXXXXXXXX-9999-999			⑧반입일 YYYY/MM/DD		⑨징수형태 99	
⑩신고인 XXXXXXXXXXXXXXXXXXXXXXXX ⑪수입자 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 X) ⑫납세의무자 (XXXXXXXX-9-99-9-99-9 / 999-99-99999) (주소) XX (상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이메일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X					⑮통관계획 X XXXXXXXXXXXXXXXXXXXXX		⑲원산지증명서 유무 X		⑳총중량 9,999,999,999,999 XX
⑬운송수선인 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 ⑭해외거래처 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 XXXX9999X					⑰신고구분 X XXXXXXXXXXXXXXXXXXXXX		㉑가격신고서 유무 X		㉒총포장갯수 99,999,999 XX
					⑱거래구분 99 XXXXXXXXXXXXXXXXXXXXX		㉓국내도착항 XXXXX		㉔운송형태 XX-XXX
⑯종류 X XXXXXXXXXXXXXXXXXXXXX					㉕적출국 XX XXXXXXXXXXXXXXXX		㉖선기명 XXXXXXXXXXXXXXXXXXXXXXXX XX		
					㉗MASTER B/L 번호 XXXXXXXXXXXXXXXX				
㉙검사(반입)장소 99999999-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품명·규격 (관번호/총란수 : 999/999)									
㉚품 명 XXXXXXXXXXXXXXXXXXXXXXXX					㉛상 표 XXXXXXXXXXXXXXXXXXXXXXXX				
㉜거래품명 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㉝모델·규격		㉞성분		㉟수량		㊱단가(XXX)		㊲금액(XXX)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XXX		9,999,999.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XXX		9,999,999.999999		99,999,999.9999	
㉜세번 부호 9999.99-9999		㉞순중량 9,999,999,999,999.9 XX		㉟C/S 검사 X XXXXXXXXXXXXXXXX		㊳사후확인기관 999,999,999			
㉛과세가격(CIF) \$999,999,999,999 ₩999,999,999,999		㉞수 량 9,999,999,999 XX		㉟검사변경 X XXXXXXXXXX		999,999,999			
㉜수입요건확인 (발급서류명)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㉝세종		㉞세울(구분)		㉟감면율		㊱세액		㊲감면분납부호 * 내국세종부호	
XX		9,999.99(XX XXX) 9999999999		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 999,999,999,999 XXXXXXXXXXXX	
XX		9,999.99(XX XXX) 999,999,999,999		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 999,999,999,999 XXXXXXXXXXXX	
XX		9,999.99(XX XXX) 999,999,999,999		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 999,999,999,999 XXXXXXXXXXXX	
XX		9,999.99(XX XXX) 999,999,999,999		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 999,999,999,999 XXXXXXXXXXXX	



수 입 신 고 서

※ 처리기간 : 3일

Form with multiple sections for customs declarations, including fields for invoice number, date, commodity name, quantity, and value. Includes handwritten annotations in blue boxes and arrows pointing to specific rows.



# 수입신고필증

※ 처리기간 : 3일

<b>①신고번호</b> 99999-99-9999999-9		<b>②신고일</b> YYYY/MM/DD		<b>③세관.과</b> 999-99		<b>⑥입항일</b> YYYY/MM/DD		<b>⑦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b> XXXXXXXXXX-X-XX-XXXXXX		
<b>④B/L(AWB)번호</b> XXXXXXXXXXXXXXXXXX(XXXX)			<b>⑤화물관리번호</b> YYXXXXXXXX-9999-999			<b>⑧반입일</b> YYYY/MM/DD			<b>⑨징수형태</b> 99	
<b>⑩신고인</b> XXXXXXXXXXXXXXXXXXXXXXXX <b>⑪수입자</b> 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 X) <b>⑫납세의무자</b> (XXXXXXXX-9-99-9-9-9 / 999-99-99999)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 (상호) 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XXXXXXXXXXXXXXXX (이메일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X					<b>⑮통관계획</b> X XXXXXXXXXXXXXXXX		<b>⑰원산지증명서</b> 유무 X		<b>⑲총중량</b> 9,999,999,999,999 XX	
					<b>⑰신고구분</b> X XXXXXXXXXXXXXXXX		<b>⑲가격신고서</b> 유무 X		<b>⑲총포장갯수</b> 99,999,999 XX	
					<b>⑰거래구분</b> 99 XXXXXXXXXXXXXXXX		<b>㉑국내도착항</b> XXXX		<b>㉒운송형태</b> XX-XX	
<b>⑬운송주선인</b> 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 <b>⑭해외거래처</b> XXXXXXXXXXXXXXXXXXXXXXXX / XXXX9999X					<b>⑰종류</b> X XXXXXXXXXXXXXXXX		<b>㉒적출국</b> XX XXXXXXXXXXXXXXXX			
					<b>㉒선기명</b> XXXXXXXXXXXXXXXXXXXXXXXX		<b>㉒선기명</b> XXXXXXXXXXXXXXXXXXXXXXXX			
					<b>㉒MASTER B/L 번호</b> XXXXXXXXXXXXXXXX		<b>㉒운수기관부호</b> XXXX			
<b>㉒검사(반입)장소</b> 99999999-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b>● 품명·규격 (관번호/총관수 : 999/999)</b>										
<b>⑳품명</b> XXX						<b>㉑상표</b> XXX				
<b>㉒거래품명</b> XXX						<b>㉒상표</b> XXXXXXXXXXXXXXX				
<b>㉒모델·규격</b>		<b>㉒성분</b>			<b>㉒수량</b>		<b>㉒단가(XXX)</b>		<b>㉒금액(XXX)</b>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XXX		9,999,999.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XXX		9,999,999.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XXX		9,999,999.999999		99,999,999.9999	
		<b>㉒세번 부호</b> 9999.99-9999		<b>㉒순중량</b> 9,999,999,999,999.9 XX		<b>㉒C/S 검사</b> X XXXXXXXXXXXXXXX		<b>㉒사후확인기관</b> 999,999,999		
		<b>㉒과세가격(CIF)</b> \$999,999,999,999		<b>㉒수량</b> 9,999,999,999 XX		<b>㉒검사변경</b> X XXXXXXXXXXXXXXX				
		₩999,999,999,999		<b>㉒환급물량</b> 9,999,999,999.999 XX		<b>㉒원산지</b> XX-X-X-XX		<b>㉒특수세액</b> 99,999,999.99		
<b>㉒수입요건확인 (발급서류명)</b>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b>㉒세종</b>		<b>㉒세율(구분)</b>		<b>㉒감면율</b>		<b>㉒세액</b>		<b>㉒감면분납부호</b>		<b>* 내국세종부호</b>
XX		9,999.99(XX XXX) 9999999999		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		XXXXXX
XX		9,999.99(XX XXX) 9999999999		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		XXXXXX
XX		9,999.99(XX XXX) 9999999999		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		XXXXXX
XX		9,999.99(XX XXX) 9999999999		9,999.99		999,999,999,999		XXXXXXXXXXXX		XXXXXX
<b>㉒결제금액(인도조건-통화종류-금액-결제방법)</b>						XXX-XX-999,999,999,999-XX			<b>㉒환율</b> 99,999.9999	
<b>㉒총과세가격</b>		\$999,999,999,999		<b>㉒운임</b> 999,999,999,999		<b>㉒가산금액</b> 999,999,999,999		<b>㉒납부서번호</b> 999-99-99-9-999999-9		
₩999,999,999,999		<b>㉒보험료</b> 999,999,999,999		<b>㉒공제금액</b> 999,999,999,999		<b>㉒총부가가치세과표</b> 999,999,999,999				
<b>㉒세종</b>		<b>㉒세액</b>		<b>※ 신고인기재란</b>			<b>㉒세관기재란</b>			
관세		999,999,999,999		XX			XX			
특소세		999,999,999,999		XX			XX			
교통세		999,999,999,999		XX			XX			
주세		999,999,999,999		XX			XX			
교육세		999,999,999,999		XX			XX			
농특세		999,999,999,999		XXXXXX			XX			
부가세		999,999,999,999		XX			XX			
신고지연가산세		999,999,999,999		전화번호 XXX-XXXX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미신고가산세		999,999,999,999		이메일주소 XXX-XXXX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b>㉒총세액합계</b>		999,999,999,999		<b>㉒담당자</b> XXXXXXXXXXXXX 999999		<b>㉒접수일시</b> YYYY/MM/DD,HH:MM		<b>㉒수리일자</b> YYYY/MM/DD		

발행번호 :

99999999999999

세관.과 : 999-99 신고번호 : 99999-99-9999999-9 Page : 999/999

\* 본 신고필증은 발행 후 세관심사 등에 따라 정정·수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발행번호 등을 이용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에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 것이므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입화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수입신고필증

※ 처리기간 : 3일

①신고번호 99999-99-9999999-9		②신고일 YYYY/MM/DD		③세관.과 999-99		⑥입항일 YYYY/MM/DD		⑦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 XXXXXXXXXX-X-XX-XXXXXXXX	
④B/L(AWB)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		⑤화물관리번호 YYXXXXXXXXX-9999-999		⑧반입일 YYYY/MM/DD		⑨징수형태 99			
● 품명·규격 (관번호/총란수 : 999/999)									
⑩품 명 XX					⑬상 표 XX				
⑪거래품명 XX					XXXXXXXXXXXXXXXXXXXX				
⑬모델·규격		⑭성분		⑮수량		⑯단가(XXX)		⑰금액(XXX)	
(NO.01) XX		XXXXXX XX		9,999,999.9999XXX		9,999,999.9999999		99,999,999.99999	
(NO.02) XX		XXXXXX XX		,999.9999XXX		9,999,999.9999999		99,999,999.99999	
(NO.03) XXXXXXX		XXXXXX XX							
⑳세번 부호 9999.99-9999		㉑순중량 9,999,999,999,999.9		XX㉒C/S 검사 X XXXXXXXXXXXXXXX		㉓사후확인기관 999, 999, 999			
㉔과세가격(CIF) \$999,999,999,999		㉕수 량 9,999,999,999		XX㉖검사변경 X XXXXXXXXXXX					
㉗과세가격(CIF) ₩999,999,999,999		㉘환급물량 9,999,999,999.999		XX㉙원산지 XX-X-X-XX		㉚특수세액 99,999,999.99			
㉛수입요건확인 (발급서류명)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㉛수입요건확인 (발급서류명)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㉜세종		㉝세율(구분)		㉞감면율		㉟세액		㊱감면분납부호	
XX		9,999.99(XX XXXX)		9,999.99		9,999.99		XXXXXXX	
XX		9,999.99(XX XXXX)		9,999.99		9,999.99		XXXXXXX	
XX		9,999.99(XX XXXX)		9,999.99		9,999.99		XXXXXXX	
XX		9,999.99(XX XXXX)		9,999.99		9,999.99		XXXXXXX	
● 품명·규격 (관번호/총란수 : 999/999)									
⑩품 명 XX					⑬상 표 XX				
⑪거래품명 XX					XXXXXXXXXXXXXXXXXXXX				
⑬모델·규격		⑭성분		⑮수량		⑯단가(XXX)		⑰금액(XXX)	
(NO.01) XX		XXXXXX XX		9,999,999.9999XXX		9,999,999.9999999		99,999,999.99999	
(NO.02) XX		XXXXXX XX		9,999,999.9999XXX		9,999,999.9999999		99,999,999.99999	
⑳세번 부호 9999.99-9999		㉑순중량 9,999,999,999,999.9		XX㉒C/S 검사 X XXXXXXXXXXXXXXX		㉓사후확인기관 999, 999, 999			
㉔과세가격(CIF) \$999,999,999,999		㉕수 량 9,999,999,999		XX㉖검사변경 X XXXXXXXXXXX					
㉗과세가격(CIF) ₩999,999,999,999		㉘환급물량 9,999,999,999.999		XX㉙원산지 XX-X-X-X		㉚특수세액 99,999,999.99			
㉛수입요건확인 (발급서류명)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㉛수입요건확인 (발급서류명)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	
㉜세종		㉝세율(구분)		㉞감면율		㉟세액		㊱감면분납부호	
XX		9,999.99(XX XXXX)		9,999.99		9,999.99		XXXXXXX	
XX		9,999.99(XX XXXX)		9,999.99		9,999.99		XXXXXXX	
XX		9,999.99(XX XXXX)		9,999.99		9,999.99		XXXXXXX	
XX		9,999.99(XX XXXX)		9,999.99		9,999.99		XXXXXXX	

\* 본 신고필증은 발행 후 세관심사 등에 따라 정정·수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발행번호 등을 이용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에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 것이므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입화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제2-1-7조 제4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수입신고서 용도별 구분

- 수입신고서(보 관 용) : 세관/신고인 보관용 수입신고서
- 수입신고필증 : 신고필증 발급용

나. 수입신고서의 형식

- 전산기에 의하여 출력되는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 신고항목의 상하 출력 위치가 가변적인 FREE FORM 형태의 서식을 사용
- 수입신고서의 좌우 출력위치는 고정적임

다. 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 또는 수출자유지역으로 반입(수입)되어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신고는 수입신고서를 사용한다.

라. 신고수리전 반출신청을 하여 승인될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B/L, 송품장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서에 보완 기재한 후 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시점에서 전산 입력토록 한다.

마. <삭 제>

바. 통계부호의 추가, 삭제, 변경사항이 시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전직원 및 관세사에게 숙지시키고 관계자료를 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한다.

사.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류등 주요품목에 부수하여 수입되는 품목으로서 금액이 적고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 징수와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부수되는 품목 중에서 무역 통계상 별의미가 없는 품목의 세번 및 수량, 중량, 포장 등으로 일괄하여 한란에 기재할 수 있다.

아. 결제금액에 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입자(화주)가 운임, 보험료를 구분하여 신고하되(CIF, DDP 등 운임.보험료가 포함된 결제조건인 경우는 제외) 관세사 등 신고인은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10.08.02 일부개정)

자. 간이 수입신고 대상물품은 수입신고서 기재항목 중 다음 항목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⑩수입자」 기재항목
- 「⑪납세의무자」 기재항목 중 「통관고유부호」 항목
- 「⑫운송주선인」 기재항목
- 「⑭통관계획」 기재항목
- 「⑱원산지증명서유무」 기재항목
- 「⑲가격신고서유무」 기재항목
- 「㉑환급물량」 기재항목
- 「㉒C/S검사」 기재항목
- 「㉓검사방법변경」 기재항목
- 「㉔사후확인기관」 기재항목

- 「요건확인서류수」 기재항목
- 「관세사기재란」 기재항목

차. 수입신고필증의 일부 항목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화주가 신고필증상에 출력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출력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카. B/L단위로 신고서를 작성하되 동일 B/L에 신고납부물품과 부과지물품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B/L을 분할하여 신고납부와 부과지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타. 신고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게 작성한다.

파. 수입신고서 출력시 출력내용이 첫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계속하여 출력하되, 신고서의 ①~⑧항목은 매 페이지별로 동일한 위치에 반복하여 출력한다.

하. 수입신고필증의 일부항목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화주가 신고필증상에 출력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출력하지 않게 할 수 있다.

## 2. 품명·규격 기재에 관한 사항

### 가. 용어의 정의

- "품명·규격"이라 함은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수입신고서상의 5개 항목을 총칭하여 말한다.
- "품명"이라 함은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말한다. 다만 관세율표상에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명을 말한다.
- "거래품명"이라 함은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에 기재되는 품명을 말한다.
- "상표명"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기호·문자·도형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지칭하는 이름을 말한다.
- "모델"이라 함은 생산방식·방법·타입·양식 등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이하 "관세율표"라 한다)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물품·관세환급·관세감면·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 "규격"이라 함은 재질·가공상태·용도·조립여부·사이즈·정격전압·처리능력·생산년도 등으로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관세환급·관세감면·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 "성분"이라 함은 당해 물품 구성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관세환급·관세감면·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 나. 품명·규격의 표기 원칙

- 품명·규격의 표기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HSK10단위)에 필요한 사항
  - 세율(관세, 내국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에 필요한 사항
  - 관세감면, 분할납부 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
- 품명·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품명·규격의 표기는 수입신고서상의 양식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 관세법 제82조(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적용대상으로서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율이 가장 높은 물품을 대표로 기재하고 그 외 물품의 품명·규격은 모델·규격 및 성분 항목에 모두 기재한다.
  -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목번호·품명·상표·원산지가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부분품, 부속품, 시약 및 개별 금액이 각각 20불이하인 소량(5개 이내)의 물품 등은 대표되는 품명을 기재하고 그외 물품의 품명·규격은 모델·규격 및 성분항목에 차례대로 기재한다.

**다. 신고인의 권한과 책임**

- 신고인은 수입요건확인서류, 송품장 등에 기재한 품명·규격이 이 요령에서 정하는 표기원칙과 다르게 작성된 때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수입신고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 관세사 등은 통관을 의뢰하는 수입업자에게 수입요건 확인서류, 송품장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명·규격을 작성하도록 전문지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신고인은 총포, 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 및 기타 불법화물일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신고서 1란부터 순서대로 기재하고, 신고인기재란(기재사항2)에 판단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작성방법 약어 설명**

구분	약어	설 명
TYPE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 <u>이내</u> 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 <u>이내</u> 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 <u>이내</u> 로 작성
SIZE	999	- 입력 또는 출력 자리수
조건	M	- 필수 기재항목
	C	- 선택 기재항목
	X	- 기재 불필요 항목
서류/ EDI	서류	- 서류작성 또는 신고서 출력시 적용
	EDI	- 신고자료 EDI전송 항목
	공통	- 서류 및 EDI공통 사용 항목

#### 4. 작성 방법

항 목	TYPE	SIZE	조 건		서류 /EDI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일반	간이			
① 신고번호 - 신고인부호 - 연도 - 일련번호  - 구분	AN AN AN  AN.	5 2 7  1	M M M  C	M M M  X	공통	○ 신고인부호, 연도, 일련번호, 구분을 기재 -수입신고인 부호기재(통계부호표 참조) -신고년도 기재 -신고인이 관리하는 연도별 일련번호로서 중복될 수 없음(일련번호(6)+CHK.DGT(1)) -일부 통관보류할 경우 통관보류된 분에 대하여는 세 관에서 부여한 부호를 기재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신고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반 출신고서의 신고번호를 기재	EDI:40620010700105 서류:40620-01-0700105-
② 신고일	AN	8	M	M	공통	○ 신고일자틀 기재	EDI:20010201 서류:2001/02/01
③ 세관-과 - 세관부호 - 과부호	AN AN	3 2	M M	M M	공통	○ 통관지 세관 및 과부호를 기재 -통계부호표 참조 -통계부호표 참조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신고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반 출신고세관의 세관 및 과부호를 기재	EDI:13010 서류:130-10
④ B/L(AWB) 번호  - B/L(AWB)번호  - 분할수입신고 여부	AN.  AN AN	20  1 4	C  M C	C  M C	공통  EDI 서류	○ House단위의 B/L(AWB)번호 및 분할수입신고 여부 -Master B/L(AWB)에 종속되어 있는 House B/L(AWB)이 있는 경우에는 House B/L(AWB)번호 를 기재(적하목록상의 House단위 B/L(AWB)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 B/L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 로 함 -B/L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할 경우 'Y', B/L분할이 아닌 경우에는 'N'을 기재 -B/L분할 수입신고인 경우 ()에 "분할"출력	DBSC96100123AB01  Y  (분할)
⑤ 화물관리번호 - MRN - MSN - HSN	AN.  AN. AN.	11 4 3	M C C	C C C	공통	○ 적하목록상의 화물관리번호 기재 -적하목록 관리번호(Manifest Reference No) -Master B/L(AWB) Sequence No. 4자리 기재 -House B/L(AWB) Sequence No. 3자리 기재 * 휴대품은 휴대품유치서상의 화물관리번호를 기재하며, 화 물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NO'로 기재	EDI:01KE0766SS200100 03 서 류:01-KE-0766SS2-10-3
⑥ 입항일	AN	8	M	M	공통	○ 입항일자틀 기재 *출항전·입항전 신고시 입항일자는 입항예정일을 전 송	EDI:20010629 서류:2001/06/29
⑦ 전자정보이스 제출번호	AN	26	C	C	EDI	○ 전자정보이스 제출번호 기재	관세상사1971015-I-07-1 2345678
⑧ 반입일	AN	8	C	C	공통	○ 장치장소 반입일자틀 기재	EDI:20010629 서류:2001/06/29
⑨ 징수형태	AN	2	M	M	공통	○ 통계부호표상의 징수형태부호를 기재 *접수통보 이후에는 징수형태 부호 변경 제한(징수형태부호 첫째자리 변경 불가 등)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신고한 물품을 수입신고기한을 경 과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에는 부과고지 징수형태 부호 기재	13 11⊗21,00⊗12,13⊗33
⑩ 신고인	AN.	50	M	M	공통	○ 신고인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기재 -관세사인 경우 신고인상호와 관세사 성명 기재 -자가통관업체인 경우 신고인 상호와 대표자 성명 기재	유한관세사법인 홍길동

						-기타 개인의 경우 성명만 기재	갑을상사(주) 관세사 홍길서  이도령
⑪수입자 - 수입자상호 - 수입자부호 - 수입자구분	AN. . AN. . AN	28 8 1	M C M	C C C	공통 공통 공통	○ 수입자 관련사항 기재 -수입자상호 또는 성명 기재 * 전자상거래물품인 경우 생략 불가 -통관고유부호 기재(개인은 기재생략) *남북교역물품은 통관고유번호 생략 불가  ○ 수입자 구분부호를 기재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 A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 B *전자상거래물품은 수입자구분부호 생략 불가	- 관세상사(주) - 12345678  - 통관고유부호가 『12345678』인 때 수입자와 납세의무 자가 동일→12345678 A 상이→12345678 B
⑫납세의무자 - 소재지 부호 - 주소 - 상호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성명 - 통관고유부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번호	AN . AN. . AN. . AN. . AN. . AN. . AN	3 40 28 15 30 12 15 13 . . 4	C M M M M M C M . . C	C M M M M M X M . . X	EDI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공통	○ 납세의무자 관련사항 기재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우편번호 앞 3자리 기재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기재 -납세의무자의 상호를 기재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이메일 주소 기재 -납세의무자의 성명을 기재 -관세청장이 지정한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개인인 경우 기재 생략)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외국인인 경우) 기재 *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 앞자리에 "F"를 기재(13자리 이내)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해당 사업장 일련번호 <작성례>본사 : 0000, 지사 : 0001 ~ (지사는 해당번호 기입)	- 302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5 - 모나리자(주) - 042-1234-5678 - 홍나리 - 모나리자1771025  - EDI : 1122966062  6510071645915 F123456789012 - 서류: 112-29-66062  651007-1645915 F123456789012
⑬운송주선인 - 상호 - 부호	AN. . AN. .	28 7	C C	X X	공통	○ 운송주선인(포워드) 관련사항 기재 -운송주선인 상호 기재 -세관에 등록된 화물운송 주선업자 부호 기재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기재 생략	- 세관무역(주) - ABCD
⑭해외거래처 - 상호 - 국가 - 부호	AN. AN AN	60 2 15	C C C	C C C	공통	○ 해외거래처 관련사항 기재 -해외거래처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 기재 -해외거래처 국가부호(ISO코드) 기재(통계부호 참조) -관세청장이 부여한 해외거래처부호 기재  *수입승인면제물품은 송품장상의 해외거래처명을 기재하고, 맨끝 2자리는 국가부호(ISO코드) 2자리 기재 *인터넷소평물은 인터넷주소와 회사명 병행 기재 예) outpost.com(Cyberian Outpost Inc) *상호 중 Corporation등의 경우는 CORP와 같이 약어로 기재	- OMR ENGR - JP - CNTOSHIN12347  * 약어사용의 예 · Corporation : CORP · International : INTL · Trading : TRAD · Limited : LTD · Company : CO · Enterprise : ENTE · Engineer : ENGR
⑮통관계획 - 부호	AN	1 16	C C	X X	공통 서류	○ 통관계획 부호를 기재 -통계부호표 참조	D 장치후 신고

- 설명	AN. .					-코드 설명(신고서 출력시)  *특급탁송화물, 간이수입통관대상은 기재 생략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신고후 수입신고하는 경우 'G(물품반출후 수입신고)'로 기재	
⑩신고구분 - 부호 - 설명	AN AN. .	1 14	M M	M M	공통 서류	○ 신고구분 부호를 기재 -통계부호표 참조 -코드 설명(신고서 출력시) ※ 유의사항 ① 일반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시에는 모두 'A'로 신고 ② 수입통관시스템에서 일반서류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B'로 자동처리됨 ③ 일반 간이신고물품은 'C' 또는 'D'를 입력하고 간이신고특송물품은 'E'를 입력	A 일반P/L신고
⑪거래구분 - 부호 - 설명	AN AN. .	2 16	M M	M M	공통 서류	○ 거래구분 부호를 기재 -통계부호표 참조 -코드설명(신고서 출력시)	11 일반수입
⑫종류 - 부호 - 설명	AN AN. .	1 16	M M	M M	공통 서류	○ 수입종류 부호를 기재 -통계부호표 참조 -코드설명(신고서 출력시)	K 내수용
⑬원산지증명서 유무	AN	1	M	X	공통	○ 관세법 제232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에 의거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해야 할 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를 기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 Y * 특혜관세(E,D,R,G,Y) 및 북한산물품중 비과세(U)를 적용하는 경우 발행번호, 발행국가, 발행기관, 발행일자 및 Tax ID No(FTA 적용물품에 한함) 기재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대상인 경우 : X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거나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 N	Y  ○발행번호: ESP12345 ○발행국가 : CN ○발행기관 -중국: 출입국검사검역소 -북한 : 민경련 ○발행일자 : 20050820 ○Tax ID : 1234567879
⑭가격신고서 유무	AN	1	M	X	공통	○ 가격신고서 제출(EDI전송) 여부를 기재 -가격신고서 제출대상인 경우 : Y -가격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 N	Y
⑮총중량 - 중량 - 단위	N.. AN	14 2	M M	M M	공통 공통	○ 신고물품의 총중량 -신고물품의 총중량(포장용기포함, 단 반복사용 운반용기는 제외)을 기재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단위는 KG으로 기재	95.2 KG
⑯총포장개수 - 개수 - 종류	N.. AN	8 2	M M	M M	공통 공통	○ 신고물품의 총포장개수 -신고물품의 외포장 개수를 기재 -신고물품의 포장종류 부호(UN/EDIFACT 기준 138종)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2 CT
⑰국내도착항 - 부호 - 항구(공항)명	AN AN. .	5 12	M M	M M	공통 서류	○ 우리나라의 도착항(공항 및 항구) 부호 -통계부호표 참조 -공항 및 항구명(신고서 출력시)	KRPUS
⑱운송형태 - 운송수단 - 운송용기	AN AN. .	2 3	M M	M M	공통 공통	○ 운송수단 및 운송용기 부호 -운송수단 부호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운송용기 부호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40 ETC

㉕적출국 - 부호 - 국명	AN. AN. .	2 7	M M	M M	공통 서류	○ 수입신고물품의 적출국 부호 -적출국 부호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해당 국가명 약어(신고서 출력시) *보세공장 및 수출자유지역은 KR(R.KOREA)로 기재	PR (PORTUGL)
㉖선(기)명 - 선(기)명 - 국적	AN. AN. .	20 2	M M	M M	공통 공통	○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기)명 및 국적 -선박 또는 항공기명을 영문으로 기재 -선박 또는 항공기 국적의 국가부호 기재	KE1098 KR
㉗Master B/L번호	AN. .	20	C	C	공통	○ 선사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Master B/L(AWB)번호 기재 -입항전 신고물품으로서 화물관리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해상화물의 경우 필수 기재	HJSC98100123AB01
㉘운수기관부호	AN. .	4	C	C	공통	○ 세관에 신고된 운항 선사 또는 항공사 부호를 기재 -입항전신고물품으로서 화물관리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해상화물의 경우 필수 기재	HJSC
㉙검사(반입)장소 - 보세구역부호	AN. .	18	M	M	공통	○ 수입물품을 검사 또는 반입할 장소 -검사 또는 반입장소의 보세구역부호와 화물의 장치 위치를 18자리 이내로 기재 *타소장치장인 경우 장치위치는 '년도(2)+일련번호(6)' 기재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신고후 수입신고하는경우 물품 반출신고시의 화물반입 보세구역부호 기재 -보세구역 명칭(신고서 출력시)	- 13011013-가 1-A-123456  - 13001000275
㉚검사(반입)장소 - 보세구역명칭	AN. .	30	C	C	서류		
●란번호/총란수 -란번호 -총란수	N.. N.. N..	3 3	M M	M M	공통 공통	-품목별란번호를 기재 -당해 신고건의 총란수(신고서 출력시)	
㉛품명	AN. .	50	M	M	공통	○ 당해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10단위에 당해 품명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기재 -10단위에 특게되어 있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9단위부터 4단위까지 순차적으로 특게된 품명을 찾아 기재 (예)OPTICAL DISK DRIVE (8471.70-2039)… 9단위 CINEMATOGRAPHIC FILM (3702.90-1010)… 8단위 LOBSTER(바다가재, 1605.30-1000) … 6단위 ANTI-KNOCK PREPARATION (3811.19-0000) …5단위 PAPER LABELS(지제라벨,4821.10-0000) …4단위 ○ 품목번호중 최종 4단위에도 관세율표상에 품명이 특게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 ○ 관세율표상에 특게된 품명이 당해물품의 성질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품명 기재 ○ 품명은 명사, 명사의 조합, 형용사+명사의 조합으로 된 것만 사용가능하며 4단어 이내로 기재 -4단어를 초과할 경우 단순한 수식어는 빼고 4단어이내로 기재 ○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에는 「~PART」 또는 「PART FOR ~」로 일괄 기재하고 구체적인 품명은 모델·규격란에 기재 ○ 시약의 경우에는 관세율표상 품명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품명·규격은 모델·규격 및 성분 항목에 기재	- TACKS (7317.00-2000 특게)  - RABBIT MEAT (토끼고기)(0208.10-0000) )  - 7108.13-1010의 경우 관세율표상 WIRE이나 GOLD WIRE(금선)로 표기

						○ 표준품명이 제정된 물품은 표준품명을 영문으로 기재	- 품명 : TOY PART 1. CAP0000, ZZZ 2. BUTTON, XXX 3. ....
㉑거래품명	AN. .	50	M	M	공통	○ 거래품명이라 함은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기재되는 품명으로서 학명을 병기하여 기재할 수 있음 ○ 영어이외의 외국어는 단순히 발음을 영자로 표기 -품명: ELETRONIC GAMES(9504.90-2000) -거래품명 : TAMAGOCHI ○ 학명은 CITES대상품목, 한약재, 조정관세 적용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품명: BELLFLOWER ROOT(도라지, 1211.90-9090) -거래품명: PLATYCODI RADIX(도라지의 학명)	- VIETNAM ROBUSTA COFFEE BEAN
㉒상표 - 상표코드	AN	4	M	M	EDI	-상표코드 ○ 관세청에 등록된 경우는 대표 상표코드를 기재, 미등록의 경우는 "ZZZZ"로 기재하고 상표가 없는 경우는 "XXXX"로 기재	- 0000
- 상표명	AN. .	30	M	M	공통	-상표명 ○ 상표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상표명(한글 또는 영문)을 기재하고 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NO"로 기재 - "BRAND" 라는 단어는 기재할 수 없음 ○ 상표가 둘 이상인 경우 란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도형상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해당 상표명(도형)을 기재. ○ 상표는 지적재산권 확인, 원산지 확인, 가격심사 등에 필수적인 기재요소로서 상표가 있는 물품을 "없음"으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함	- NIKE -
● 합의세율신청 및서류 첨부여부	AN	1	M	M	EDI	○ 합의세율 신청 및 해당품목의 모델·규격의 일부만 입력하고 세부내역은 서류로 별첨(attach)할 것인지 여부 - 일부입력 : 'Y' - 전부입력 : 'N' - 합의세율 신청 + 일부입력 : 'A' - 합의세율 신청 + 전부입력 : 'B' ○ 신고서 출력시 - 'Y'인 경우 '모델·규격'란에 "상세내역 별첨" 표시 - 'A'인 경우 '모델·규격'란에 "합의세율(상세내역 별첨)" 표시 - 'B'인 경우 '모델·규격'란에 "합의세율" 표시	
● 총 규격수	N..	3	M	M	EDI	○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의 개수 기재	
㉓모델·규격 - 규격번호 - 모델·규격	N.. AN. .	2 90	C C	C C	EDI 공통	○ 해당 품목의 세부 모델 및 규격 -모델·규격별 일련번호 -세관 심사에 필요한 모델 및 규격을 기재 *하나의 모델에 규격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규격별로 규격앞에 모델명을 기재  ○ 모델명 기재방법 -모델은 생산방식, 생산방법, 타입 등을 나타내는 부	

					<p>호로써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 관세감면, 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규격 앞에 “MODEL:” 라는 단어를 기재한 후 영문 대문자로 모델명을 기재</p> <p>○ 규격 기재방법</p> <p>-규격은 재질, 가공상태, 용도, 조립여부, 사이즈, 정격전압, 처리능력, 생산년도 등으로써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관세환급, 관세감면, 과세가격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규격은 주로 관세율표상에 OF, FOR, WITH등의 단어로 표현되므로, 규격 기재시 가능하면 관세율표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것</p> <p>-물품에 따라 세관심사에 필요한 규격사항을 기재</p> <p>*냉동홍어의 경우 냉동여부만 기재      품명: SKATE(홍어, HS 0303.79-9093)      규격: FROZEN</p> <p>*엔진의 경우는 품목분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여러가지 요소를 기재      품명: ENGINE      규격: GASOLIN ENGIN 2,500CC, FOR SEDAN, 1998YEAR</p> <p>○ 미술품 모델·규격 기재방법      다음 순서대로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itle(작품명)</li> <li>- Artist(작가)</li> <li>- Year(제작년도)</li> <li>- Dimension(크기)</li> </ul>	- MODEL:M520T
㉓모델·규격					<p>○ 용도의 기재방법</p> <p>-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세번의 물품은 식용, 공업용, 사료용, 비료용, 의약품, 동물의약품, 연구실험용, 기타 등의 용도를 영문자로 표기한다. 다만, '기타'라고 표기한 경우 ( )안에 구분 가능한 용도를 영문 또는 한글로 기입한다.</p> <p>·표기방법 USE : EDIBLE</p> <p>&lt;용도 기재사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용 : EDIBLE</li> <li>-공업용 : INDUSTRIAL</li> <li>-화장품용 : COSMETICS</li> <li>-사료용 : FEEDING</li> <li>-미끼용 : BAIT</li> <li>-비료용 : FERTILIZER</li> <li>-의약품 : MEDICINAL</li> <li>-동물의약품 : ANIMAL MEDICINAL</li> <li>-연구실험용 : RESEARCH</li> <li>-기타 : ETC(용도)</li> </ul> <p>○ 자동차 모델·규격 기재방법</p> <p>-기재형식 : [모델명],[차대번호],[주요특성]의 순서로 기재</p> <p>-모델명 : BMW520i, BENZ320S등으로 기재</p> <p>-차대번호 : 17단위. 모델명 다음에 콤마(,)로 구분하여 기재</p> <p>-주요특성 : 배기량, 제작년도, 주행거리, 차체형상, 변속기형식, 엔진번호 등을 차대번호 다음에 각 주요특성마다 콤마(,)로 구분하여 기재</p> <p>-2대 이상인 경우 줄을 바꾸어 기재</p> <p>-란을 초과(50대이상)하는 경우 새로운 란에 기재하거나</p>	<p>USE : EDIBLE          USE : INDUSTRIAL</p> <p>BENZ320S,WBDGA33          EOTA312272,1997cc,2          0 0 1 y r , m i l e          35758,4D,Auto,1G          6831372</p>

					수입 B/L분할신고방법으로 신고가능  * 주요특성 예시 -배기량 : 1997cc -제작년도 : 2001년식 -주행거리 : 35,758 mile -차체형상 : 4D 세단 (Four Door Sedan) -변속기형식 : 수동, 자동, 반자동, 무단변속기등 -엔진번호 : 1G 6831372 -기타 수입신고서 기재 필요사항  * 기재예시 BENZ320S,WBDGA33EOTA312272,1997cc,2001yr,mile 35758,4D,Auto,1G 6831372  (다음 계속)	
㉔모델·규격					○ 규격의 유형별 기재사례  <타입 기재사례> -수평형,수직형: VERTICAL, HORIZONTAL -작동방식: PORTABLE, PNEUMATIC, HYDRAULIC -제어방식: CNC, PLC, ATC  <상태 기재사례>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PASTE, LIQUID, PELLET, POWDER, GAS, CRYSTALLINE POWDER -가공상태 · CRUDE, RAW, LIVE, FRESH · ROASTED, CALCINED · FROZEN, DRIED, DEHYDRATED · CONCENTRATED · COLD ROLLED, HOT ROLLED  <조립여부 기재사례> -KNOCKDOWN, UNASSEMBLED -UNFINISHED  <사이즈 기재사례> -Scarf: W 500mm X L 500mm -Sheet: T 20mm X W 300mm X L 1,500 -Tile : T 2mm X W 200mm X L 200m -Distributer : T 1,400mm X D 746mm X H 2,025mm -Tube: T 20mm X ID 200mm X OD 250mm  <처리능력 기재사례> -A4 15 sheet/M -150 KVA  <정격전압 기재사례> -200V, 100KV  <생산년도,등급 기재사례> -몇년도 산 : Year1995, Year1996 -연 령 : 17year old -Grade : A grade  ○ 모델·규격 기재 오류 사례 -품명: COFFEE(커피, HS 0901.11-0000) 거래품명: COLOMBIAN GREEN COFFEE 모델·규격: 미기재 오류사항 : 볶은 것인지 여부 및 카페인 제거여부 미	

						표기로 품목분류 불가능 -품명: SUITCASE(슈트케이스, HS 4202.11-1040) 거래품명: SUITCASE 모델·규격: BLACK 오류사항: 재질 미표기로 품목분류 불가능	
㉔성분	AN.	70	C	C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기재</li> <li>○ 성분 기재방법 -성분은 당해물질의 성분 및 함량으로써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물품, 관세환급, 관세감면, 과세가격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및 함량을 기재한다. -농산물 혼합물 및 실·직물의 경우는 성분 및 함량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li> <li>○ 성분 기재사례 -청바지는 주된 성분의 함량만을 기재하나 청바지용 직물은 성분의 종류 및 함량, 중량 등을 기재하여야 함 품명: COTTON WOVEN FABRIC (HS 5208.11-0000) 성분: COTTON 100%, 40G/m<sup>2</sup> 품명: BLUE JEAN(청바지, HS 6203.42-1000) 성분: COTTON 100%, -농산물 혼합물 기재사례 품명: Seasoning(양념, HS 2103.90-9030) 거래품명: tateki 성분: RED PEPPER POWDER MAXED WITH SALT 18%, WATER 42%, GARLIC POWDER 7%, ONIONPOWDER 5%</li> <li>○ 성분 기재오류 사례 -품명: CANE SUGAR (사탕수수당, 1701.11-2000) 성분: RAW SUGAR POLARIZATION BETWEEN 98 AND 98.99 DEGREES 오류: 당도표기 모호(당도 98.5를 기준으로 세번이 달라지나 당도가 양 세번에 걸쳐 있어 세번 분류 불가능) -품명: LACTOSE(유당, 1702.19-1000) 성분: REFINED EDIBLE FINE POWDER 오류: 유당의 함유량 미표기로 세번분류 불가(99%를 기준으로 세번이 달라짐) -품명: COCOA PREPARATION (1806.20-9010) 성분: 15%(18M/T) USD4,554.- 오류: 함량표기 불분명(밀크분 함량50%를 기준으로 세번이 달라짐)</li> </ul>	
㉕수량 - 수량 - 단위	N.. AN.	14 3	C C	C C	공통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품목의 모델·규격별 수량</li> <li>-모델·규격별 수량을 소수점이하 4자리까지 기재(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li> <li>-실제 수량단위를 기재</li> </ul>	45.6785 PCS
㉖단가	N..	18	C	C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품목의 모델·규격별 단가를 결제통화 단위로 기재</li> <li>-정수 12자리,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기재(소수점 이하 7자리에서 반올림)</li> <li>-소수점 이하 숫자중 '0000' 부분은 서류(신고서) 출력시 제외</li> <li>- ',' 와 '.' 을 포함하여 출력할 전체 자리수가 16 자리를 초과할 경우 앞에서부터 16자리만 출력</li> </ul>	30.402575 - 123,456.750000의 경우 123,456.750000 (×) 123,456.75 (○) - 12,345,678,901.234560의 경우 45,678,901.23456(×) 12,345,678,901.2(○)

㉟금액	N..	16	C	C	공통	○ 해당 품목의 모델·규격별 금액을 기재 -정수 12자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기재(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이하 숫자중 '0000' 부분은 서류(신고서) 출력시 제외 - ',' 와 '.' 을 포함하여 출력할 전체 자리수가 16 자리를 초과할 경우 앞에서부터 16자리만 출력	30.4627 - 123,456.7500의 경우 123,456.7500 (×) 123,456.75 (○) - 12,345,678,901.2340의 경우 2,345,678,901.234(×) 12,345,678,901.23(○)
㊦단가/금액 통화종류	AN	3	M	M	서류	○ V결제금액란의 통화종류 부호를 단가 및 금액항목 우측( )안에 출력 -D단가(XXX), E금액(XXX)	- D단가(USD) E금액(USD)
㉠세번부호	AN.	10	M	M	공통	○ 관세율표에 기재된 H.S.K. 10단위 품목번호를 기재 -간이세번은 간이세율표에 기재된 세번을 기재(3단위)	EDI : 6106202000 서류 : 6106.20-2000
㉡과세가격 - 미화 - 원화	N.. N..	10 12	C C	C C	공통 공통	○ 해당 품목의 과세가격 -과세가격을 미화로 기재(CIF기준 US\$) -과세가격을 원화로 기재	
㉢순중량  - 단위	N.. AN	14 2	C C	C C	공통 공통	○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순중량 -관세율표에 기재된 당해 물품의 중량단위로 환산하여 기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중량단위가 KG(LC 등)인 경우에는 용기를 포함한 중량을 기재 ○ 단위는 KG으로 기재	99999.9  KG
㉣수량  - 단위	N.. AN.	10 2	C C	C C	공통 공통	○ 관세율표에 기재된 수량단위로 환산 기재 -관세율표상에 중량단위만 있고 수량단위 부호가 특 게되어 있지 않은 것은 기재하지 않음(중량만 기재)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기재 ○ 관세율표에 기재된 수량단위를 기재 (U외 10개) CR : carat(카라트) M : metres(미터) M2 : square metres(제곱미터) M3 : cubic metres(세제곱미터) L : litres(리터) DZ : dozens(타) MW : mega watt(메가와트) U : pieces/items(개,본,매,두,필,대,량,기,척,착) 2U : pairs(쌍, 켈레, 족) TU : thousands units(천본, 천매) *수량단위가 U로 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송품장등에 수량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packs으로 되어 있어 개 개의 수량을 파악하기 불가능한 물품의 경우는 packs(U)단위로 기재	30  DZ
㉤환급물량  - 단위	N.. AN	13 2	C C	X X	공통 공통	○ HS별 표준수량과 관계없이 소요량 계산시 실제 사용하는 단위로 환급 사용 물량을 기재 (예 : ㉢항목 10DZ → ㉣항목 120PCS) -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기재 (소수점이하 4자리에서 반올림) - 환급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0.000'으로 기재 - 단위는 소요량 계산시 실제 사용하는 단위로 기재 ○ 환급물량을 입력하지 않고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에서 오류 통보 ※ 환급물량 입력대상 : 수입관리 부호 (형태별 분류) - 11,12,13,14,15,21,22,29,51,52,55,59, 80,83,84,87,88,89,92,93,94	120PCS
㉥C/S 검사 - 검사구분부	AN	1	C	X	서류	○ C/S결과 검사구분 부호 -세관에서 접수통보한 C/S검사구분 부호를 기재 (출력	Z

호 - 설명	AN. .	12	C	X	서류	시) -검사구분 부호설명(출력시)	비적용대상
④④검사변경 - 부호	AN	1	C	X	서류	○ C/S검사방법 변경 부호 -세관에 의해 C/S검사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검사방법 변경부호(출력시)	X
- 설명	AN. .	12	C	X	서류	-변경부호 설명(출력시)	검사->생략
④⑤사후확인기 관	AN AN AN	3 3 3	C C C	X X X	공통	○ 수입물품이 사후확인대상인 경우 당해 수입요건확 인기관의 부호를 3개까지 기재 -통계부호표 참조	123
- 기관 1	AN	3	C	X			
- 기관 2	AN	3	C	X			
- 기관 3	AN	3	C	X			
●요건확인 서류수	N..	2	C	X	EDI	○ 요건확인서류의 개수를 기재(최대 8개)	
④⑥원산지 - 국가부호	AN	2	M	M	공통	○ 원산지 결정 및 표시 관련사항 기재 -상품의 원산국(생산, 제조국) 국가부호 기재 -원산지결정기준부호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원산지 표시유무 기재 (통계부호표 참조) -원산지 표시방법 기재 (통계부호표 참조) -원산지표시 면제사유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유무가 'Y','B','G'인 경우 원산지표시방 법을 기재 * 원산지표시 면제사유 원산지 표시유무가 'E'인 경우 원산지 표시 면제사유를 기재	US A Y B 01
- 결정기준	AN	1	M				
- 표시유무	AN	1	M				
- 표시방법	AN	1	C				
- 표시면제사유	AN	2	M				
④⑦특수세액	AN. .	8	C	C	공통	○ 특수세액 계산근거 -주정인 경우 알콜도수를 기재 -비디오 테이프 등 분당으로 계산되는 종량세인 경 우 란별 충분수 기재 -내국세4종 물품(귀금속,모피,양탄자,고급가구 등)인 경우 기준가격 초과분 개수 또는 조 기재	000000.00
④⑧수입요건확 인	AN AN. .	3 20	C C	C C	EDI 공통	○ 타법령에 의한 수입요건확인 관련사항(법제226조) -'911': 승인서 등, '852':검사/검역증 -타법령에 의하여 수입요건에 대하여 허가·승인 등 을 받은 요건확인서의 허가·승인 번호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요건신청과 동시 또는 요건승인전 에 신고할 경우 요건신청서 신청번호 -수입요건확인서류명 · 신고서 출력시 20자리까지 ( )로 표시 -수입요건확인서류 발급일자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요건신청과 동시 또는 요건승인 전에 신고할 경우 "0000년00월00일"입력 -수입요건확인 관련 법령부호(통계부호표 참조)	E D I : 4123009700000010 서 류 : 4-123-00-97-00000010
- 구분	AN	3	C	C	EDI		
- 요건승인번 호	AN. .	20	C	C	공통		
- 발급서류 명	AN. .	35	C	C	EDI		
- 발급일자	AN	8	C	C	EDI		
- 법령부호	AN	2	M	M	EDI		(수입식물검사합격증 명) 20010805 12
●요건확인물 량	N.. AN. .	10 3	C C	C C	공통 공통	○ 수입요건 승인기관에서 승인한 물량단위 수량 기 재 -승인 물량단위 기재(UN/EDIFACT 수량단위 참조)	(123,456,000 BTL)
- 단위	N.. AN. .	3	C	C	공통		
④⑨세종	AN. .	2	M	M	서류	○ 관세와 각종 내국세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기재 - 관세인 경우 "관" - 특수세인 경우 "특" - 교통세인 경우 "통" - 주세인 경우 "주" - 교육세인 경우 "육" - 농특세인 경우 "농" - 부가세인 경우 "부"	
⑤⑩세율	N.. .	6 10	C C	C C	공통 공통	○ 세종에 해당하는 세율구분과 세율을 기재 -관세의 세율을 기재 -종량세인 경우 세율 대신 단위당 세액 기재	- 0000.00
- 관세율 (단위당 세	N.. .	6 10	C C	C C	공통 공통		

액) - 관세구분 - 관세역기 준 - 내국세율 - 내국세 구 분 - 세율구분	N.. AN. . AN. N.. AN. . AN.	2 1 6 2 7	M M C C C	M M C C C	EDI EDI 공통 EDI 서류	-관세율 구분부호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1' : 종가세, '3' : 종량세 -내국세의 세율을 기재 -내국세 구분 부호 (통계부호표 참조) -관세율란에는 당해 품목에 대한 관세율구분부호 및 구분명을 ( )에 기재 -내국세율란에는 내국세구분부호를 ( )에 기재	- (W1 협가)  - (2A)
㉑감면율	N..	6	C	C	공통	○ 해당 세목의 감면율을 기재	99.99
㉒세액	N..	12	C	C	공통	○ 각 품목별 해당 세액을 기재 -원 미만은 절사하고 기재 -수리전 반출승인물품은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세액을 기재 -보세공장 및 수출자유지역에서의 사용신고 또는 반입신고시 산출된 세액을 기재	999,999,999,999
㉓감면분납부호 - 감면분납부호 - 부가세감면 부호 - 특소세면세 부호 - 주세면세부호 - 과세보류 - (감면액)	AN. . AN. . AN AN AN AN N..	12 7 7 8 7 12	C C C C C C	C C C C C C	공통 공통 공통 공통 서류 공통	○ 감면분납부호 및 감면액 기재 -관세인 경우 감면분납부호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부가세 감면인 경우 부가세 감면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특소세 면세인 경우 특소세 면세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주세면세인 경우 주세 면세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보세공장 및 수출자유지역에서의 사용신고 또는 반입신고시에는 "과세보류" 로 표시 -관세감면액을 ( )에 기재	예)수출물품 재수입면세 - A099000001 - K120100 - L190014, L190015 - D310201 - "과세보류"  (2,001,020)
㉔내국세종부호	AN	6	C	C	공통	○ 내국세인 경우 내국세 세종부호를 기재 (통계부호표 참조)	201000 (특소세: 냉장고와 냉동고)
㉕부가세과표 - 과세과표 - 면세과표	N.. N..	12 12	C C	C C	EDI EDI	-부가세과세과표를 기재 -부가세면세과표를 기재	
㉖특송업체 C/S	AN	1	C	C	EDI	○ 특급택송물품의 경우 특송업체 자체 C/S결과를 기재 -'Y':검사 'N': 생략	Y
㉗결제금액 - 인도조건 - 통화종류  - 결제금액 - 결제방법	AN AN  N.. AN	3 3  12 2	C M  M M	C M  M M	공통 공통  공통 공통	○ 송품장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결제금액, 결제방법순으로 기재 -인도조건은 INCOTERMS 90 코드를 기재 -통화종류는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코드를 기재 (단, 관세청 고시환율에 해당 통화코드가 없거나 또는 결제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USD"로 통일) -금액은 통화종류에 따른 금액 기재(INCOTERMS 90 코드 이외에는 환산하여 기재 : 통계부호표참조) -결제방법부호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CFR-USD-100,001,310-DA
㉘총과세가액 - 미화 - 원화	N.. N..	10 12	C C	C C	공통 공통	-신고서 총 과세금액을 미화로 기재 -신고서 총 과세금액을 원화로 기재	\$999,999,999,999 ₩999,999,999,999
㉙환율		9	M	M	공통	○ 53번 항목의 통화종류에 대한 관세청 고시환율을	1,210.1234

	N..					기재 *결제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환율은 기재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신고후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 품반출신고시의 환율 기재	
⑤7운입 - 금액 - 통화종류	N.. AN	12 3	C C	C C	공통 EDI	○ 운입에 대한 통화종류 및 금액을 기재 -운입은 실제 지급한 운입을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 -통화종류는 "KRW" 기재	999,999,999,999
⑤8보험료 - 금액 - 통화종류	N.. AN	12 3	C C	C C	공통 EDI	○ 보험료에 대한 통화종류 및 금액을 기재 -보험료는 실제 지급한 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하여 기 재 -통화종류는 "KRW" 기재	999,999,999,999
⑤9가산금액 - 통화종류	N.. A	12 3	C C	C C	공통 EDI	○ 품목전체에 영향을 미친 가산금액을 원화로 환산 하여 기재 -통화종류는 "KRW" 기재	
⑥0공제금액 - 통화종류	N.. A	12 3	C C	C C	공통 EDI	○ 품목전체에 영향을 미친 공제금액을 원화로 환산 하여 기재 -통화종류는 "KRW" 기재	
⑥1세종(합계)	A..	14	C	C	서류	○ 관세 및 내국세의 종류(출력시)	관세
⑥2세액(합계)	N..	12	C	C	공통	○ 세종별 세액합계를 기재	
⑥3총 세 액 합 계	N..	12	C	C	공통	○ 총 세액 합계를 기재	
⑥4납부(고지) 서번호	AN	15	C	C	서류	○ 세관에서 접수통보시 부여한 납부(고지)서번호 -세 관(3)+과(2)+년도(2)+고지 유형(1)+일련번호 (6)+CHK.DGT(1)	130-10-98-1-069624-9
⑥5총 부가가치 세과표 - 과세과표 - 면세과표	N.. N..	12 12	C C	C C	공통 EDI	-총부가세과세과표를 기재 -총부가세면세과표를 기재	
● 특송업체부 호	AN	2	C	C	EDI	○ 특송업체부호를 기재	
● 응답형태	AN	2	M	M	EDI	○ 응답형태를 기재 'AB':응답필요 'NA':응답불필요	AB
● 신고인기재 란 - 구분부호 - 기재사항1  - 기재사항2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AN AN. . AN. . AN. AN.	3 200  300  15 30	C C  C  M M	X X  X  M M	EDI   공통	○ 관세사가 신고서 표시사항 또는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를 구분하여 기재 -관세사 기재 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신고서에 출력하지 아니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  -신고서에 출력할 사항 기재 · 사전회시번호 및 시행일자, 콘테이너번호 및 수량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이메일 주소 기재	-ABB     042-1234-5678
⑥6세 관 기 재 란	AN. .	500	C	C	서류	○ 의무이행요구사항 등 세관에서 필요한 사항 기재	
⑥7담당자 - 성명 - 직원부호	AN. . N	12 6	C C	C C	서류 서류	○ 세관 심사담당자 성명 및 직원부호 - 심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 - 심사담당자의 직원부호를 기재	홍길동 990112
⑥8접수일시	AN	12	M	M	서류	○ 세관에서 접수통보한 접수일시를 기재	01/02/01,13:30
⑥9수리일자	AN	8	M	M	서류	○ 신고수리일자 기재	20010202